

금융산업의 역동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 제도·관행 개선 추진현황

2015. 3.

본 자료집은 2014년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금융혁신 노력을 소개한 것으로, 금융개혁 추진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금융감독 제도·관행 개선 추진현황	2
가. 검사·제재 관행 쇄신	
1. 검사 및 제재 방식 개선	2
2. 검사매뉴얼 개편	5
나. 금융감독 혁신 및 업무절차 개선	
1. 자율·창의를 촉진하는 맞춤형 금융감독 강화	6
2.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개선	7
3. 행정지도 정비 및 관리 프로세스 강화	8
4. 유권해석 절차 정비	9
다. 업무관행 개선	
1. 자료요구 관행 개선 및 검사 요구자료 표준화	10
2.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및 정비	11
III.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12
【참고자료】	18

I. 추진 배경

- 감독당국은 보수적인 감독·검사관행이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감독당국의 검사·제재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사 및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14.9월)
 - 균질화된 인허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14.5월)
 - 행정지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비명시적 지도를 일제 정비하고, 행정지도 관리프로세스를 강화('14.10월)
 - 사후제재 가능성 및 법규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 마련('14.10월)
 - 금융회사의 보고서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감독당국의 자료요구 관행 개선 및 불필요한 보고서 정비방안 마련('14.9월) 등
- 특히 지난 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선방안들 또한 금융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음
- 앞으로도 '금융개혁회의'를 중심으로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금융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규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임

Ⅱ. 금융감독 제도·관행 개선 추진현황

가. 검사·제재 관행 쇄신

1 검사 및 제재 방식 개선 (참고자료 - I·Ⅱ·Ⅶ)

가. 현황 및 문제점

- ☐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와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후대응 위주'의 감독, '적발 위주'의 검사관행 및 실효성 없는 제재제도에 대한 비판이 대두
 - 또한, 감독당국의 경직적 검사와 직원 제재 등 금융회사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업무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나. 개선방안

- ☐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사·제재 업무를 혁신

검사방식의 개선	• 관행적 검사 축소, 중대사안 중심의 현장검사 강화 • 사후적발 → 사전 예방 • 부실여신 책임규명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실시 •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 강화
제재방식의 개선	•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의뢰 • 여신면책제도 활성화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조치 확대 • 검사·제재의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 제재심의제도 개선

다. 추진현황 및 계획

- ☐ 상기 개선방안은 '15.3월 현재 시행 중
 - 다만, 제재심의제도 개선('15.2월 마련)은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15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 ☐ 검사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의 원칙 폐지('15.상반기)

<검사방식 개선 주요내용>

①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및 단계적 폐지

- 관행적인(예: 2년주기 검사 등)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

* 종합검사 횟수 : (최근 3년 평균) 38.5회→('15) 21회→('16) 10회 내외→('17~) 원칙 폐지

-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경영상태 취약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② 문제소지 부문 중심의 선별적 검사 강화

- 검사를 통해 모든 위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부문·금융회사에 대한 '선별적 검사'를 강화

③ 사전예방감독 강화

-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 및 다수의 금융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현장검사 실시

*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기 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금융상품정보시스템 및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등으로 구성

④ 부실여신 책임규명은 금융회사 자체 책임하에 실시

- 부실여신 책임규명은 금융회사 책임 하에 실시하고, 금감원은 중대·거액 부실여신(예:50억원 이상) 중심으로 검사

⑤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 대폭 강화

- 금감원은 중대한 사항에 집중하고, 경미하거나 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개선토록 조치
- 특히 반복적 위규사항을 유형화(최근 3년간 5회 이상 지적 40개 유형, 1,409건)하여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자체 시정토록 지도('14.4분기)

*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내부감사 점검대상을 협의하여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자체 검사계획에 반영·운영한 후, 내부감사 이행결과에 대해 소관 검사국에 보고하고, 검사국은 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제재방식 개선 주요내용>

①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의뢰

-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감사역 및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14.11월)

② 금전적·기관 중심의 제재를 확대

-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보다 금전적·기관중심의 제재를 확대
- 신규업무 제한이나 M&A 불승인 등과 같은 제재방식을 지양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한 실질적 불이익 부과방안 모색

③ 여신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여신 부실화와 관련하여 제재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열거 (면책기준 Negative化)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14.11월)

④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현지조치 확대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현장검사가 끝난 이후에도 현지조치가 가능토록 관련절차를 개선('13.10월)

⑤ 검사·제재의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 검사종료 후 검사국장이 금융회사 경영진 의견을 청취(「검사국장 면담제도」)하고, 검사결과 사전통지 이전에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운영

⑥ 제재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제재심 위원 명단(Pool) 공개 및 조치예정내용의 사전누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제재심 민간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 상향 등 개선방안*을 마련('15.2월)

* 검사·제재 규정은 '15년 상반기중 개정 예정

2 검사매뉴얼 개편 (참고자료 - V)

가. 현황 및 문제점

- 검사매뉴얼의 방대한 분량, 광범위한 점검사항 나열, 금융환경 변화 미반영 등으로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

< 업권별 검사매뉴얼 현황 >

업권	업무단위		분량
	매뉴얼명	내용	
은행	은행검사매뉴얼	검사업무전반, 자산분야, 부채 및 자본분야, 기타분야, 경영실태평가, 신용정보업,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3,000p
보험	보험검사매뉴얼	검사계획수립·착수 등 업무처리절차, 자산운용규제 등 단위업무별 체크리스트·검사기법 등 기술	1,098p
자본	금융투자검사매뉴얼	검사계획 수립·착수 등 업무처리절차, 세부업권별단위업무별 체크리스트·검사 기법 등 기술	1,709p

나. 개선방안

- 금융회사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위주로 재정비하고, 분량을 대폭 축소
- 자주 지적되거나 제재가 빈번한 검사항목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 업데이트
 - 실무와 괴리되어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검사에 활용되지 못하는 불필요한 검사항목을 발굴·시정
- 해설서의 경우에도 반기별로 업데이트 필요성을 점검

다. 추진현황 및 계획

- 권역별 검사매뉴얼 개편(은행 '15.상반기, 타권역 '15.하반기)
- 「매뉴얼 혁신 작업반」을 구성*하여 업권별 실무작업 진행중
- * 금감원(감독총괄국, 업권별 검사·감독국) 및 업권별 협회 등

나. 금융감독 혁신 및 업무절차 개선

1 자율창의를 촉진하는 맞춤형 금융감독 강화 (참고자료 -Ⅶ)

가. 현황 및 문제점

-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 대두
 - ‘되는 것과 안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곤란

나. 개선방안

- 금융회사들이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을 혁신

다. 추진현황 및 계획

- 업권별·금융회사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중개기능을 제약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기준을 개선
 -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금융업종 또는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
 -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확대
 - 업권별 건전성감독 기준과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중복되거나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

*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규제 폐지

-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
 - 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영업행위에 대한 간여 자제

2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참고자료 - I · III)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늦으며,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

나. 개선방안

- 인허가 업무가 일관성 있고 적정기간내 처리되도록 사전협의제, 심사창구 일원화 및 약식심사제도 등을 도입

인허가 업무 처리절차 개선 주요내용

- ◆ 금융회사가 인허가 신청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사전협의제' 도입
- ◆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창구를 일원화
- ◆ 간단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제도 도입
- ◆ 인허가 심사시 금융감독원 실무자별 업무처리 품질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당자·팀장 협업심사 실시
- ◆ 인허가 심사담당자의 친절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 최근 법규 개정사항 및 실무사례 등을 반영하여 인허가 핸드북 정비

다. 추진현황 및 계획

-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허가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14.5월)
 - 개선방안을 정착시키고 인허가 담당자의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 인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15.1~3월)

3 행정지도 정비 및 관리 프로세스 강화 (참고자료 - IV·V)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이드라인 등 비공식 행정지도 건수가 과다하고 형태도 다양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
 - 행정지도시 금융당국간 협의 및 시장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행정지도 관리도 체계적이지 못함

나. 개선방안

- 불분명한 가이드라인 등 행정지도를 대폭 정비하고 행정지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

「행정지도 관리 프로세스 강화」 주요 내용

- ◆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을 단축(1년→90일)하여 남용을 방지
 - * (중전)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 기타 경미한 사안 → (개선)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
- ◆ 행정지도의 의견청취 제도를 구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
 - *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공청회도 활용
- ◆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하여,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

다. 추진현황 및 계획

- 산업권의 비공식 행정지도(총 680건) 정비결과, 폐지 291건, 협회등의 자율운영 359건,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운영 30건
 - 아울러, 행정지도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위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 개설('14.10월), 내부 행정지도 관리 시스템 정비('15.3월)

4 유권해석 절차 정비 (참고자료 - VI)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당국의 소극적 유권해석으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곤란
 -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 창구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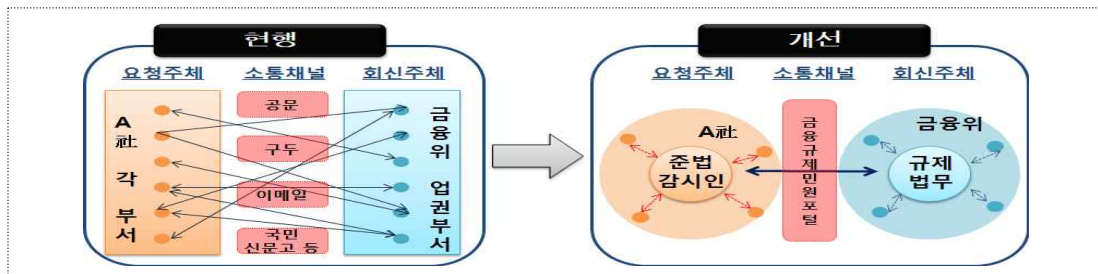
나. 개선방안

- 금융위와 공동으로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유권해석 등 요청경로 단일화 및 금융위 내 총괄부서 지정·운영

- 유권해석 등 접수창구를 “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일원화하고, 금융회사의 질의창구를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으로 단일화
 - 금융위 내에 유권해석 총괄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를 지정·운영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내에 “유권해석 지원팀” 신설 예정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및 “유권해석 정보인프라 구축”

-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금융위 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유권해석 사례를 DB화하고 「금융법규 유권해석집」을 포털에 게시
-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한 제도 홍보 강화,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 메뉴얼」 배포 등

다. 추진현황 및 계획

- 유권해석·비조치의견 총괄부서(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감원 법무실)를 지정하였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금융위) 설치 완료
 -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월), 유권해석 사례 DB화(15.8월) 등은 진행중

다. 업무관행 개선

1 자료요구 관행 개선 및 검사 요구자료 표준화 (참고자료 - I)

가. 현황 및 문제점

- CPC(Central Point of Contact)를 통한 금감원의 자료 요구* 및 검사현장에서의 자료제출 요구가 증가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 제기**

* ('10)2,597건 → ('11)3,393건 → ('12)4,343건 → ('13)5,463건 → ('14.상)3,121건

** '14.7.9. 은행연합회는 정부 추진 '숨은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CPC를 통한 자료제출 요구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

나. 개선방안

- 요구자료 감축을 위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

* 연평균 20%이상 증가하는 수시 자료요구를 줄이기 위해 반복 요구자료 정비, 자료요구 통제 강화 등을 통해 매년 10%(3년간) 감축 추진

- 다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요구자료 활용도평가 등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

- 금감원 및 금융회사 직원(검사부) 등이 참여하는 '검사요구 자료 표준화 T/F'를 구성·운영하여 자료정비 추진

다. 추진현황 및 계획

- '15년중 수시 요구자료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18년까지 3년간 매년 10% 감축 추진*

* ('15°)6,242건 → ('16°)5,618건 → ('17°)5,056건 → ('18°)4,550건

- 승인권자 상향조정(팀장→임원), 사용자 편의기능 및 과거 제출 자료 활용도 제고 등 CPC 관련전산시스템 개선('15. 상반기)

- 금감원 TF에서 검사사전요청자료 표준화작업을 추진중이며, Pilot Test를 거쳐 확정할 예정('15.상반기)

2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및 정비 (참고자료 - I)

가. 현황 및 문제점

- 감독업무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임에도 법규에 따른 보고의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부담 발생

나. 개선방안

- (1차 정비) 감독업무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 폐지, 보고기준 완화 등 정비대상 보고서를 선정('15.1월)

[예시] 민사소송 패소 확정 건 보고기준 완화 추진

- ◆ 현재 민사소송 패소가 확정되거나 10억원 이상 소송 건에 대해 금융회사는 수시 보고(검사제재규정§42) 하고 있으나, 감독업무 활용도는 극히 낮음

* '14.6월말 현재 38개사(18개 은행 및 증권·생보·손보·카드 상위 각 5개사) 소송 건수는 39,153건(소송가액은 6.9조원)

- 민사소송 패소 확정건의 경우 보고대상 패소금액 상향 조정 및 보고주기 완화 추진 필요

- (2차 정비) 사전승인·보고·신고 대상중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 또는 폐지가 가능한 항목을 발굴중

-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3월중)하여 사후보고 전환시 발생 가능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고려하여 정비대상 결정

다. 추진현황 및 계획

- 1차 정비대상 보고서 및 추가로 발굴중인 사후보고 전환 가능 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 간소화 추진 예정('15년중)

Ⅲ.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가. 금융개혁 방향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안)
Ⅰ. 자율 책임 문화 조성	① 금융감독 쇄신	①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② 금융회사 수수료·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 ③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②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④ 혁신·역량 평가로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⑤ 내부통제·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⑥ 성과평가 개선 등 창의적 금융 우대문화 조성
Ⅱ. 실물 지원 역량 강화	③ 기술금융 확충	⑦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금융 질적 성장 유도 ⑧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투자 활성화 ⑨ 전문조직구축·인력양성 등 역량 확충
	④ 자본시장 기능 강화	⑩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인프라 개편 ⑪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⑫ 국가 자산과 민간 금융간 상호발전
Ⅲ. 금융 산업 경쟁 제고	⑤ 핀테크 육성	⑬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생태계 구축 ⑭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⑮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⑥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⑯ 금융규제 유형별(Category) 강화·완화 ⑰ 경쟁촉진을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 ⑱ 신상품·신시장 개척을 위해 세제, 외환규제 개선
접근 방식	현장 중심	벤치 마크 상시 평가

* ①, ③, ⑤ : 2.23일 청와대 발표 24개 핵심개혁과제 포함 과제

1 자율책임 문화 조성

① (금융감독 쇄신) 감독당국 역할 재정립 (코치 → “심판”)

① (감독·검사·제재 개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감독·검사·제재 전체 프로세스(process)를 혁신

-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검사 정착
-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받은 기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 등

② (시장기능 존중) 금융회사 수수료·금리·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 보장

-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 금융상품간 비교 공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여건의 성숙을 전제

③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금융위·원 합동 점검반이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애로, 규제, 관행을 발굴·해결

-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No Action Letter 활성화)

②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역량 강화,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 조성

④ (보수적 관행 혁신) 혁신성평가지 은행 역량강화 및 혁신 노력(조직·인력, KPI, 성과평가 등) 평가를 강화하여 변화 유도

⑤ (금융사 자율책임 정착)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윤리규범 정립 ⇒ 소비자 보호 강화

-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및 조직을 강화

⑥ (창의적 금융 우대) 제재·면책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의적·혁신적 임·직원이 대우받는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

2 실물지원 역량 강화

③ (기술금융 확충) 은행 스스로 역량을 키워 기술금융이
착근되도록 하고, 투자방식 기술금융 공급도 확대

⑦ (실태 조사 및 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벤처·창업기업 등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질적 보완

- 특히, 위험부담이 큰 창업·기술기업 등에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⑧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 기술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술금융투자도 활성화*하여 Two-track 지원체계 구축

*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3천억원(성장사다리 1천억), IP펀드 1천억원 조성 등

⑨ (전문역량 확충) 금융회사 스스로 전문조직 구축,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을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

④ (자본시장 기능 강화)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로 전환

⑩ (인프라 개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

⑪ (사모펀드·모험자본 획기적 육성)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M&A를 통한 회수기회를 대폭 확대

*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코넥스 운영방식 전면개편 등

⑫ (국가자산·금융 상호발전)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마련

* '14.9월말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약 1,263조원(전체 금융자산의 약 31%)

3 금융산업 경쟁 제고

5 (핀테크 육성) IT·금융 융합에 대응한 핀테크 활성화 추진

13 (핀테크 생태계 구축) 핀테크사·금융사·정부가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

- 미래부 등과 협업하여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 해결

1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금산분리” 원칙 하에 제한적 보완 및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6월말까지 도입방안 마련

15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권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의 가능범위 및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 「금융보안원」을 4월중 설립하고, 금융사 스스로 IT·보안투자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 구축

6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금융사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제고+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16 (금융규제 유형화·개선) 금융감독 역할 변화(코치→심판)에 맞춰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하여 강화 또는 완화

- * 시장질서·소비자보호(강화), 영업·건전성 규제(국제기준·역량별 합리화)
- 금융위·금감원간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의 중복부담 해소

17 (칸막이 규제 완화) 업무영역·판매채널 확대, 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제공 등 경쟁·융합촉진 규제 개선

- * 복합점포 활성화(보험, 非계열 확대 등), 온라인 판매채널 상품 다양화, 1금융그룹 1자산운용사 인가원칙 폐지 등

18 (신상품·신영역 개척 지원)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제도 개선

- * 독립투자자자문업(IFA)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활성화하고, 전통적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종합자산관리기능(IWA 등)에 맞춰 정비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및 외환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

나. 추진 전략

- ① (추진 체계) 선진사례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관련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강력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



- ① 「**금융개혁회의**(의장: 민간위원)」: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 ⇒ 광범위한 의견수렴
* 현행 “금융혁신위”를 금융·경제·산업·학계 대표 등을 포함해 확대 개편
- ② 「**금융개혁추진단**(단장: 금융위원장)」: 관계부처 1급(기재·미래·산업·중기청 등)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 ⇒ 협업으로 신속 추진
※ 부처 협업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
- 「**금융개혁 자문단**」: 학계·연구원 및 금융회사 전문인력 약 20~30인 ⇒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성공전략 제시
- ③ 「**금융개혁 전담조직**(금융위·원 합동 상설조직)」
* 금융위에 「(가칭)금융개혁 총괄국」을 설치하고, 금감원에도 금융규제·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우선, 금융위·원 합동 점검반 구성 ⇒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
* 현장에서 요청하는 금융개혁 과제를 취합하고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현장애로 해소

② (추진 방식) 금융현장 중심,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평가 강화

① “금융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

- 위원장이 매주 1~2회 현장방문 ⇒ 점검 및 현장애로 청취
 - * 기술금융·중소·벤처·창업·상장·IT 기업 등 현장 방문, 금융회사 권역별 실무자, 금융소비자 등 간담회 추진
- 위원장 참여 「金요회」 신설 ⇒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금융위 간부들도 매주 현장방문 ⇒ 현장과 소통 활성화
- 주요 주제별 릴레이 세미나 ⇒ 개혁과제 발굴
 - * 모험투자 활성화, 고령화시대 금융부문 역할, 서민금융 활성화,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지원체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

②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금융권에 성공전략 제시

- 국내 금융업(은행·증권·보험)의 취약 요인 및 감독·검사·제재 개선과제 등 해외 선진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대안 마련

③ 주요 대책의 인지도 및 현장 체감도에 대한 “평가 강화”

- KDI, 금융연, 자본연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 심층조사·평가

③ (추진 일정) 신속하게 추진하고 실제 변화를 상시 점검

-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세부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즉시 발표후 추진 (※ 필요시 “경제장관회의” 상정)
- (관행개선 과제) 즉시 조치⇒ 변화 점검
- (하위법령 과제) 시행령·규정은 최대 3개월 내 개정완료
- (법률 과제) 정기국회까지 법안 국회제출 추진

【 참 고 자 료 】

I.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19
II.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43
III.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50
IV.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58
V.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68
VI.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	77
VII. 금융감독 채신 및 운영 방향	88

(참고 I)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2014.9.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
2.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감독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

I. 추진 배경

- 동양그룹 사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 ‘뒷북치기 式’, ‘적발위주’의 검사관행 및 실효성 없는 제재 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 사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시행되었으나 최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가 상존하는 등 한국 금융의 민낯은 여전히 그리 아름답지 않은 상황임
- 한편, 사후적발 중심의 검사관행과 부실여신 취급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금융권의 몸 사리기를 조장하고 있어,
 -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검사 및 제재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음
- ➡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와 제재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면서,
 - 검사·제재 자체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종전의 틀을 혁파해 나갈 계획임

금감원의 검사·제재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

- 금융회사의 자율경영과 적극적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음
-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신분상 제재에 집중하여 리스크 회피를 유발
-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경직적*

* 저축은행사태 이후 감독당국 업무수행에 대한 외부의 비판 및 감사원 등의 감사·처벌이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가 경직화되고 있다는 평가

<참고> 최근 현장검사로 본 한국 금융의 민낯

- ◇ 동양그룹 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등 대형 금융사고 이후에도 일부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무관심과 단기성과주의 문화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

(사례1) 펀드판매 미스터리 쇼핑 결과 : 불완전 판매 행태가 여전

- '14.6월중 펀드 불완전판매 미스터리 쇼핑 결과, 점검대상 회사(30개사) 중 절반이상이 '미흡' 또는 '저조' 수준으로 동양사태 이후에도 금융현장의 영업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

< 펀드판매 미스터리 쇼핑결과 회사별 수준 >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합계
회사수 (구성비)	2개 (6.7%)	6개 (20.0%)	7개 (23.3%)	7개 (23.3%)	8개 (26.7%)	30개 (100.0%)

(사례2) 자산운용사의 영업실태 점검결과 :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 상존

- '14.6월중 전 자산운용사(86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 결과, 조직적 투자자 보호법규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

<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

① 조직적 투자자 보호법규 위반, ②임·직원의 자기매매, ③일임재산 운용·관리 미흡, ④불건전한 갑을(甲乙) 관계로 시장질서 교란, ⑤ 개인·기관간 고객 차별

(사례3)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전

- '14.7월중 9개 보험회사 점검 결과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보험 또는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종신보험을 판매
- 한편,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다는 민원도 급증('13년 上 6,191건 → '14년 上 7,293건)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 빈발

II. 검사 및 제재 혁신방안

〈 기 본 방 향 〉

- ◆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사와 제재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면서,
- 검사·제재 자체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 ➔ 검사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혁신

검사관행의 혁신

- 관행적 검사는 축소, 중대취약사안 중심의 현장검사 강화
- 사후적발 → 사전예방 감독 중심으로 운영
- 부실여신 책임규명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실시
-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 강화

제재방식의 혁신

-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를 금융회사에 조치의뢰
- 여신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 대신 현지조치 실시

검사·제재와 관련한 소통 강화

- 검사·제재의 투명성 제고 및 검사관련 소통 강화
-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

1

검사 관행의 혁신

- ◆ 관행적인 검사를 축소하고, 시스템에 의한 사전예방 감독·검사를 강화
- ◆ 부실여신 책임규명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강화

가 관행적 검사 축소 및 중대취약사안 중심 현장검사 강화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 및 취약회사 중심으로 실시
 - * (예시) 은행 종합검사 주기 완화·운영:(현행) 약 2년 → 3년(경영실태평가 우수은행)
- 검사방식도 업무전반(full scope)에 대해 실시하지 않고, 취약 부문을 진단·개선하는 경영실태평가 형식으로 운영
- 이에 따라 '14년중 종합검사를 연초 계획된 26회에서 19회로 축소 운영하고, '15년에도 20회 내외로 유지할 계획
 - * 종합검사 현황 : 77('10) → 62('11) → 41('12) → 34('13) → 19('14)
- 테마별로 실시하는 부문검사는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와 내부통제기준의 착근 실태 확인에 집중
 - 특히, 정보유출 사태로 취약성이 드러난 IT 부문은 외부 전문기관과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점검도 강화*
 - * '금융보안 표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금융회사 CEO 및 금감원에 보고

중점 현장검사 사항(예시)

- 개인정보 유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 CP, 회사채, 파생상품 등 신상품 및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확대 및 점검방법 다양화
- 동양그룹사태·고객정보 유출사태 등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 재발방지대책 및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착근되는지 여부

나 사후적발 → 사전예방 감독 중심으로 운영

□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을 통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적시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

-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위험상황에 따라 소비자 정보, 특별검사, 제도개선 등 단계적 조치를 실시

* (Financial Risk Early Identification System) 감독, 검사, 민원처리 등의 과정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 위험요인 인지 → 원인 및 대응방안 모색 → 선제적으로 현장 기동검사, 금융회사 지도 등 필요조치와 연계

□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컨설팅방식의 검사를 활성화

- 사후적 제재 보다는 자금세탁방지, IT·정보보안, 공시 제도 운영 등 취약 우려 부문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인 및 소비자 권익 침해사례 발생을 예방

< 컨설팅방식 검사조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컨설팅 조치	2,308	2,420	2,370	3,133
경영유의	689	864	946	1,101
개 선	466	384	371	723
현지조치	1,153	1,172	1,053	1,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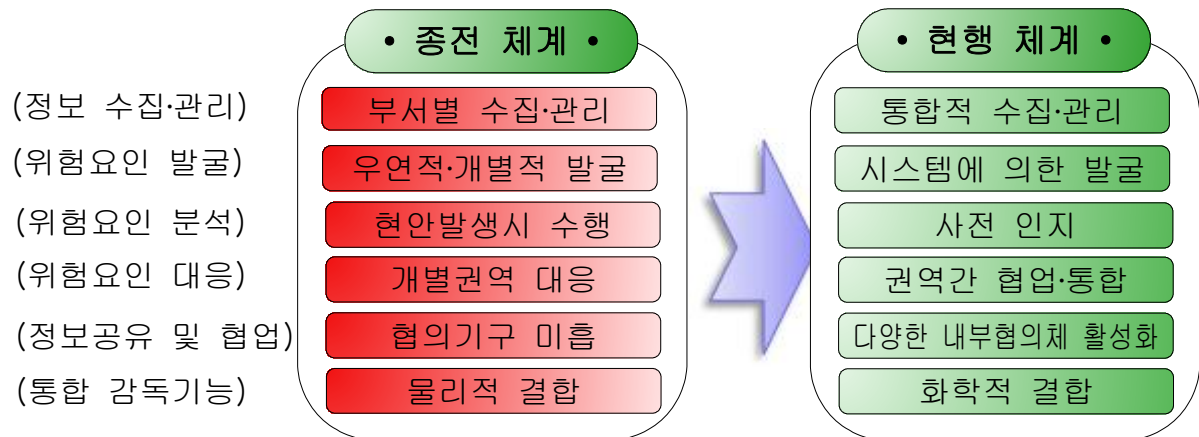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 운영 성과(예시)

-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이상징후 여신 점검 과정에서 KT ENS 대출사기 발견('14.2월)
- 자산운용시장의 채권 불공정거래 위험요인을 인지한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14.6월)
-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해 은행 영업점 현장검사 실시결과, 예금편의 취급, 중요증서 잔고 불일치 등 다수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례 적발 및 시정('14.6월)
-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포착하고 완전판매 대책(판매중단조치 등)을 마련토록 지도('14.8월)

<참고>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의 구축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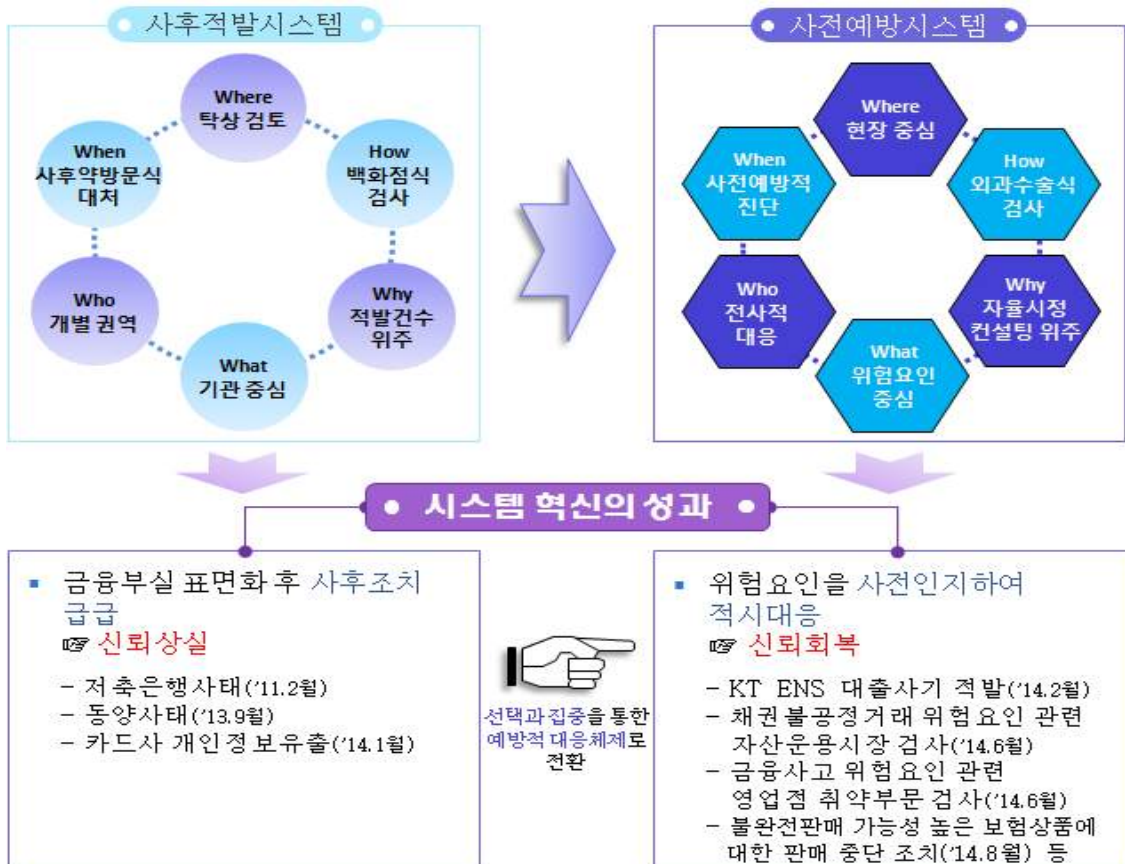
일하는 방식의 변화

- 금융감독시스템 혁신을 위한 사전인지체계 구축



감독·검사시스템 혁신

- 기관중심 사후적 감독 → 위험요인 중심 사전예방 감독



다 부실여신 책임규명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실시

□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를 지양하고, 전반적인 여신관리시스템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여신검사 방식을 전환

-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책임 하에 실시하고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거액 부실여신 중심으로 검사

※ 지금도 은행에 대한 부실여신 검사가 본점 및 거액여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나 기술금융 여신이 위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이번 여신검사방식 전환과 함께 은행의 중소기업 및 기술금융 여신의 자율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여신관리시스템을 검사할 때는 거액여신 중심으로 운영하고, 검사범위도 대폭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

- 대형은행의 경우 건전성 수준별로 정상 1,000억원, 요주의 300억원, 고정이하 여신 50억원 이상(예시) 거액여신 위주로 검사
 - 검사범위도 기업여신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25% 정도를 추출하여 검사하던 것을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
- 다만,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 소지가 우려되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수준에 따라 검사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 한편, 시스템에 의한 여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잠재된 부실위험 및 사고 징후를 사전포착하는 노력을 병행

- 현재 운영중인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상시감시 시스템'을 은행 및 상호금융 등 다른 여신취급 금융회사로 확대 구축 추진

라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 강화

- 금감원은 중대 위법행위 및 취약부문에 감사역량을 집중
 - 경미한 위규사항 및 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위임하여 금융회사가 내부감사기능을 통해 스스로 개선토록 조치
-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규사항을 유형화하고,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통해 자체 시정을 유도할 계획
 - 최근 3년간('11~'13년)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규사항을 총 40개 유형(1,409건)으로 분류
 - 금감원은 이들 지적사항을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
 - 금융회사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내부감사협의회'('14.1월 도입)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
 - 아울러 반복적 위규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에서도 그 원인 분석 및 제도적 개선 등 재발방지 노력을 경주

반복적 검사지적사항 재발방지 절차

- 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규사항을 유형화하여 각 금융회사에 통보
- ② 각 금융회사에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자율시정을 추진
- ③ 필요시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협의·선정
- ④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감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행 여부를 점검
- ⑤ 내부감사 이행결과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
- ⑥ 모범사례 및 주요 유형은 워크숍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

<참고> 금융권역별 반복적 감사지적사항 주요 유형('11~'13년)

- ◇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규사항을 총 40개 유형(1,409건)으로 분류
- ◇ 권역별로는 고객에 대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가격정보 미제공(은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금투), 보험료 횡령·유용(보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BIS비율 과대산정(비은행)이 가장 많음

순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 ^{주)}
1	고객에 대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가격정보 미제공(10건)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 내부통제 불철저(28건)	보험료 횡령·유용(48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비율 과대 산정(85건)
2	불합리한 직원 제재 기준 운영 등 내부통제 불철저(10건)	투자종개업자의 일임운용 제한위반(23건)	운영기준 미비 등 기부금에 대한 내부통제 불철저(13건)	대출 부당 취급(62건)
3	전산시스템 접근 통제 등 관리업무 불철저(9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23건)	보험금 지급업무 운영 불합리(13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51건)
4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7건)	위탁증거금 미납 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22건)	신용정보 이용 및 관리 불철저(13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29건)
5	트레이딩·비트레이딩 데스크분리 등 내부통제 불철저(6건)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19건)	보험모집 수수료 부당지급 등 불건전 보험 모집(12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유지비율 미준수(28건)

주) 저축은행, 신탁,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 등)

2

제재방식의 혁신

- ◆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여신면책제도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

가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를 금융회사에 최대한 조치의뢰

- 그간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 제재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위규행위에 대한 조치를 의뢰*

* 금감원이 위법·부당을 금융회사에 통보하면 제재대상 및 수준은 금융회사가 자체결정

- 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는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조치의뢰대상에서 제외
-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진 은행,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 직원 제재를 금융회사에 의뢰(견책·주의)할 경우 직접제재가 약 90% 이상 감소 예상
<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 현황('13년 소금융권기준) >

구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계
제재대상자(명)	12	45	115	438	675	1,285

- 조치의뢰대상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법질서위반 행위를 제외한 모든 지적사항

금융회사 조치의뢰 제외대상(예시)

-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금융범죄 행위
- 금융사고,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등 금융질서 교란 또는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 검사방해 행위, 직원이 주행위자로서 임원 관련 위법·부당행위 등

- 검사·제재시행세척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여 시행하되,
 - 현재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 업권별·금융회사별 자율제재의 형평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양정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후점검을 실시

나 여신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여신관련 원칙 면책·예외 제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취급 여건을 개선* (금융혁신위원회 논의 과제)

*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은 면책

- 제재대상 행위를 더욱 구체화·규정화하여 자의적 판단 소지를 원천 차단
- 면책여부에 제재대상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재심의회 부의전에 여신관련 검사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전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면책판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면책사유 확대(Negative 방식 전환 등), 제재시효도입 등 관련 법규 개정 필요 사항은 금융혁신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한편, 잘못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시일이 한참 지난 경미한 잘못들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 검사대상이 되는 업무취급 기간을 일정기간(예 : 5년) 이내로 축소 운영하고, 향후 실시되는 검사부터 적용
- 다만, 위법·부당행위가 연속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사대상기간을 확장 운영

기관·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

- 향후 신분적 제재가 축소됨에 따라 시장평판 및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기관·금전적 제재 강화를 추진(금융혁신위원회 논의 과제, 법률개정 필요)

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지조치 실시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제재조치를 하는 대신 검사 현장에서 금융회사가 바로 시정토록 현지조치 실시를 확대
 - 기존에는 단순 착오, 이미 시정되어 조치실익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만을 현지조치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다소 지연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내부기준 위반 등 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도 현지조치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적용
 -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임원이 관련된 사항은 제외
 - 그간 현지조치를 검사현장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현장검사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내에 검사국내 내부협의체*를 통해 현지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식을 확대

* (예시) 국장, 기획팀장, 3인 이내의 검사팀장(담당 검사반장 포함)

◆ 현지조치란?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한 또는 불합리한 사항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 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관리도 당해 금융회사에 위임하고 있음

* 현지조치 추이(건) : 1,153('10) → 1,172('11) → 1,053('12) → 1,309('13)

3

검사·제재와 관련한 소통 강화

- ◆ 고압적 검사, 적발건수 중심의 검사관행을 척결하고 금융회사의 업무에 불편·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
- ◆ 금융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검사·제재의 수용도 제고

가 검사·제재의 투명성 제고 및 검사관련 소통 강화

- 검사결과 사전통지 이전에 조치수준이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는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운영 강화
 - 기관·임원 제재, 직원 중징계 등 중대사안에 대해 검사실시 부서 및 유관부서장이 조치수준의 적정성을 사전 협의
-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국장이 금융회사 경영진, 감사로부터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검사국장 면담제도」 운영
 -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담당 검사반장 및 검사직원을 제외하고 면담을 진행하여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나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심(對審)제도*를 적극 활용
 - 제재심의에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제재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심의 지연 사례를 막기 위해 대심 절차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제재심의위원이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III. 향후 조치계획

- 법규 개정 없이도 바로 실행이 가능한 개선과제는 즉시 시행
 -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및 중대·취약사안 중심 현장검사 강화
 - 사전예방감독 및 컨설팅 중심 검사 운영
 - 부실여신 책임규명을 금융회사가 자체 실시하고 금감원은 중대·거액여신 중심으로 여신검사방식을 전환
 - 현재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하여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조치의뢰를 최대한 확대 적용
 - 반복지적 위규사항의 유형화 및 전파를 통한 금융회사 자율 시정기능 강화 유도
 - 경미한 위반사항의 현지조치 확대
 - 검사제재 관련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추진
- 여신면책제도 Negative 전환, 기관·금전적 제재 강화 및 제재시효 도입 등 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융위 등과 금융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
 - 다만, 제재시효제도의 경우에는 법규 개정 이전이라도 지체없이 검사대상기간을 축소 운영

※ '14.9월부터 금융위 주관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과제 이행상황 점검 예정

금융회사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감독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I.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을 추진중임
 -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관심사 및 인·허가 프로세스를 개선('13.5월, '14.5월)하였으며
 -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사 관행 및 방식을 지속 혁신하고 있음
 - 그럼에도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인허가 심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타성적이고 금융회사를 배려하지 않는 등의 업무관행이 여전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역동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함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자료요구 수준이 과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가중
- 금융회사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답변이 너무 늦음
- 인·허가 신청시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심사 처리를 지연

금감원 업무관행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만·애로사항 조사결과

◇ 그간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

(사례1) 과도한 자료징구 관행 : 금융회사 업무부담 가중

□ CPC지원시스템(이하“CPC”)*를 통한 자료징구의 건수가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관련 자료 요구도 과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

* Central Point of Contact : 자료요구 창구를 일원화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07.12월에 구축

** 자료요구 건수: 2,597건('10)→3,393건('11)→4,343건('12)→5,463건('13)→3,121건('14.상)

*** 금융회사는 검사요구자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작성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금감원 감찰실 설문조사 결과)

(사례2) 금융회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 : 불만족

□ 금감원의 답변 내용이 ①명확하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②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③답변이 너무 늦다는 등의 불만*

* '14.6월, 금융투자업 종사자 229명을 대상으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사례3)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혁신방안 : 착근 미흡

□ 금년 5월에 인허가 업무 진행시 사전협의회 개최, 협업·약식심사제도 도입, 심사창구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시행하였으나,

○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심사업무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지 못하고 있음

* [사례] '14.6~8월경 0000업 등록 심사시 충분한 사전협의 및 협업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심사업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의 불만 초래

II.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

〈 기 본 방 향 〉

◆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인허가 심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타성적이고 배려가 부족한 업무관행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 우리원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혁신

금융회사 보고서 제출 부담 대폭 완화

- ‘CPC요구자료 총량제’ 도입
 - ’15년:전년수준 동결, 이후 매년 10%(3년간) 감축 추진
- 검사요구자료 표준화 (T/F 구성·운영)
 - 검사현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료를 요구
-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또는 보고기준 완화

금융회사 질의 회신체계 전면 개편

- 부서내 전담번호사 지정을 통해 신속명확한 답변 제공
- 법규 관련 반복적 질의·답변(FAQ) 전용 사이트 개설
- 준법감시인 워크샵 등을 통한 업계와의 소통 강화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착근 유도

- 심사과정 전반 만족도 등 해피콜 실시
- 심사진행 현황에 대해 임원이 직접 관리·통제
- 심사프로세스에 대한 내부감사 강화 및 평가 결과 피드백

1

금융회사 보고서 제출 부담 대폭 완화

- ◆ 금융회사 눈높이에서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CPC 요구자료 총량제 실시, 검사요구자료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일괄 정비 등 업무 관행 개선

가

CPC를 통한 자료요구 대폭 축소

①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으로 자료요구 30% 감축 추진

-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하여 '15년부터 부서별로 전년 수준에서 요구 수준을 동결하고, 이후 매년 10%(3년간) 감축 추진
- 불요불급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요구 없이 정기 업무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복적 요구자료는 업무보고서 항목에 포함

② 자료요구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자료 활용도 피드백 실시

-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자료의 중요도·긴급성 수준에 따라 임원 보고후 요구토록 관련 통제 강화
 - * (예시) 다수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부원장보 또는 부원장 승인
- 매분기 원장 주재 '업무점검의 날'에 각부서별 '요구자료 총량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피드백 강화
- 요구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활용결과를 피드백

- 내부감사시 '부서별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실태'를 테마점검 과제로 운영하여 시정 조치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 * (예) 정기적·반복적 요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서 포함 여부 및 자료요구에 대한 통제절차 준수 여부 등

③ 충분한 작성기간 부여 등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성 제고

- 자료제출기한을 '3영업일 이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나, 작성자료의 범위가 넓고 복잡한 경우 '7영업일 이상' 부여
- 금융회사 활용 CPC지원시스템에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 제출자료 확인 및 활용이 가능토록 개선

④ 금융회사와 'CPC운영협의회' 운영으로 애로 사항 청취·해소

- 반기별로 금융회사 실무자와 'CPC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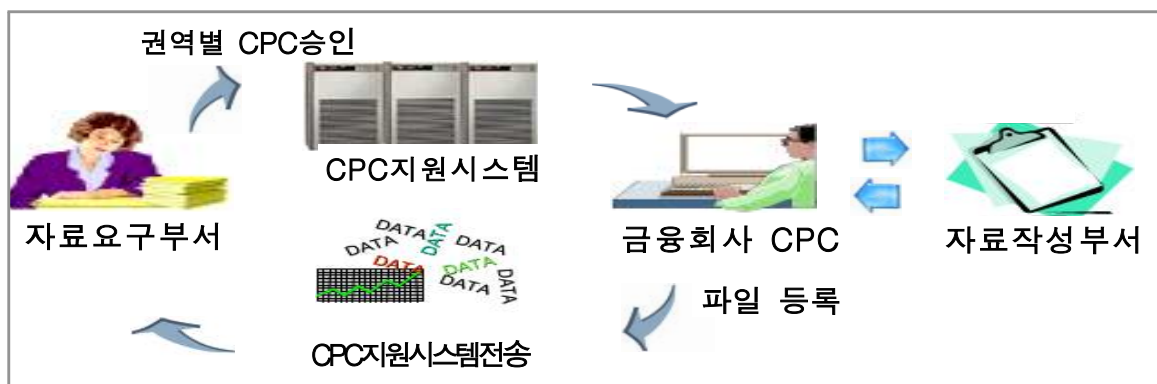
<참고> CPC지원시스템 개요

□ 금감원은 감독·검사 및 국회요구자료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와 연결된 'CPC'를 통해 징구

- CPC를 통한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이슈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

* 2,597건('10) → 3,393건('11) → 4,343건('12) → 5,463건('13) → 3,121건('14.상)

** 징구목적('13년 기준) : 일반업무 73.0% 국회자료 24.5% 공지사항 2.5% 순



나 **검사자료 요구관행 개선으로 금융회사 수검 부담 경감**

① **검사 요구자료 표준화·정비 [금융회사와 공동 TF 운영]**

- 금감원 및 금융회사 직원(검사부) 등이 참여하는 ‘**검사요구자료 표준화 TF**’를 구성·운영하여 검사 자료의 활용도 점검 및 보완·폐기 여부 결정 등 자료정비 추진

검사 요구자료 정비 방안 (예시)

- 활용도가 높은 추가 징구자료는 **표준화하여 사전요구자료에 포함**
- 정기적(예: 매년)으로 자료 활용도를 각 검사국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폐기 또는 추가 징구할 자료범위를 개선
- 표준 검사요구자료를 금융회사의 **자체감사에도 활용하도록 유도**

② **검사현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료요구**

- 검사 요구자료는 사전 징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현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요구
-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서면에 의한 자료 요구’ 절차를 철저히 준수

③ **검사 자료요구 상황에 대한 내부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 현장검사 실시후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감찰실의 설문조사시, 자료요구 관련 부문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 및 심층분석 활용
- 검사부서에 대한 내부 감사시 검사현장에서의 자료요구 실태를 중점 점검
- 내부 감사 및 감찰실 설문조사 결과는 검사품질 관리업무에 반영하여 미흡사항 개선 조치

다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또는 보고기준 완화

-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세칙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보고서(약 300건)의 필요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 불필요한 보고서를 폐지하거나 보고기준을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

* 규정 개정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건의하고, 세칙 개정 필요사항은 즉시 추진

보고서 정비 방향

- 감독업무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는 폐지
- 사전보고 필요성이 낮은 보고서는 사후보고로 전환
- 수시보고서 중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업무보고서에 포함
- 중요도에 따라 보고주기, 보고대상 범위 등을 조정·완화

- 우선적으로 민사소송 패소 확정 건 보고기준 완화 추진
 - 현재 민사소송 패소가 확정되거나 10억원 이상 소송 건에 대해 금융회사는 수시 보고(검사제재규정§42) 하고 있으나, 감독업무 활용도는 극히 미흡

* '14.6월말 현재 38개사(18개 은행 및 증권·생보·손보·카드 상위 각 5개사) 소송 건수는 39,153건(소송가액은 6.9조원)

⇒ 민사소송 패소 확정건의 경우 보고대상 패소금액 상향 조정* 및 보고주기 완화(수시 → 매분기) 추진

* (예시) 은행 3억원 이상, 보험사 1억원 이상, 카드사 3천만원 이상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금융위 건의)

<패소금액 상향 설정(상기 예시)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 효과>

- '13.1~14.6월중 금융권(38개사)의 패소확정(패소율 50%이상) 723건을 대상으로 위 기준 적용 시
 - 보고건수는 72.5%(524건) 감소
 - 보고 문서량은 63.6%(5,764매) 감소[판결문당 평균 10매 가정+공문 1매]

2

금융관련 질의 회신체계 전면 개편

◆ 금융법규 및 감독절차 등에 대한 질의에 신속·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및 업계와의 소통 강화

1 부서내 전담변호사 지정을 통해 신속·명확한 답변을 제공

- 부서내 변호사를 법규 전담요원으로 지정·운영
- 복잡한 사안은 팀장·부서장이 공동협의하여 신속히 답변의견을 마련하고, 필요시 원내 '유관분야 지정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

* '14.9.17. 현재 총 101명의 변호사가 각 부서에 근무 중이며, 전문성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40명을 '유관분야(민사·행정, M&A 등 7개분야) 변호사'로 지정하여 각 부서 이슈에 공동 대응

2 법규관련 반복적 질의·답변자료(FAQ) 전용 사이트 개설

- 현행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법규' 메뉴내에 '법규관련 FAQ' 코너를 신설*하여 금융회사와 공유가 필요하거나 반복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

* 현재 'FAQ'는 금융소비자 정보사항과 법규내용이 혼재되어 운용되고 있어, 이를 분리하여 '법규관련 FAQ'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법규' 메뉴내 배치

3 신속한 유권해석을 위해 금융위와의 협업 강화

- 법규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금융위에 즉각 송부하여 신속한 답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4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한 업계와의 소통 강화

-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 워크숍(매분기) 등을 통해 중요 질의 및 답변 사례에 대하여 공유·설명하고
- 법규상 이슈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 활용방안 등 금융회사 자체 법무기능 강화 유도*

* 금융회사 현업부서 및 영업점 등에서 내부 법무담당 부서를 통한 기존 법률해석 확인없이 금감원에 중복 내용을 질의하는 사례도 다수

3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착근 유도

◆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혁신방안이 감독실무 현장에 착근 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

1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 해피콜 실시

- 인허가 심사 완료 후 인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해피콜 실시

2 인허가 심사 진행현황에 대해 임원이 직접 관리·통제

- 임원이 담당 부서별 심사 처리현황을 매주 단위로 직접 관리·통제하고, 매분기별로 원장 주재 '업무점검의 날'에 집중평가

3 심사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감사 강화 및 평가결과 피드백

- 내부감사시 감사 중점점검항목으로 운영
- 점검결과를 내부적으로 공개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III. 향후 조치계획

□ 개선과제는 즉시 시행

- 다만, CPC를 통한 자료요구 개선, 검사요구자료 표준화, 법률관련 FAQ코너 신설 등은 전산시스템 보완 또는 T/F 운영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이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토록 추진

(참고Ⅱ)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2015.2.13. 보도자료)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2015. 2. 13.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I 주요 개편내용

1. 제재심 성격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제재심을 자문기구가 아닌 제재 결정기구로 오해
 - 제재결정권자가 제재심의 판단을 반복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
- (개선방안) 제재심은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제재심이 자문기구 성격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치

< 「검사·제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안) >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4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2.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제재심에 금융위 직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른 제재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등 외부의 오해 야기
- (개선방안)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 보유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발언권은 보유하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 제한
 - 제재와 관련한 금융위의 의사결정은 금융위(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융위 의결이 있기 前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 다만,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 등을 위하여 발언권은 유지

3. 제재심 구성 다양화 등

(1) 현황 및 문제점

① (다양성 미흡) 민간 위원이 특정분야에 집중(법조 4명, 학계 2명) 되어 IT·소비자보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 미흡

② (심의부담 과중) 6명으로 정해진 제재심 민간 위원이 전 권역의 안전을 다량 심의함으로써 심의부담 과중

* 제재심 심의 안전수 : ('11년) 323건 → ('12년) 358건 → ('13년) 422건 → ('14년) 416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③ (민간 위원 경력요건) 교수, 법조인 등의 경우 5년이상 경력 요구 → 타 위원회*에 비해 경력요건이 짧으므로, 경력요건 강화 필요

* (감사위원회) 판·검사·변호사 10년 이상, 부교수 8년 이상
(공정위·방통위) 판·검사·변호사 15년 이상, 부교수 15년 이상

(2) 개선방안

① (민간 위원 Pool제 도입) 제재심의 민간위원 6명을 2배수인 12명의 Pool로 운영

- 법조계·학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또는 IT 등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 또한 이를 통해 위원들의 안전 검토부담을 분산·경감함으로써 내실있는 심의 도모

※ 민간 위원 Pool제 세부 운영내용

- 제재심 민간 위원의 Pool은 12명으로 하되, 제재심에 실제 참여하는 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으로 총 9명으로 유지
- 금감원장은 민간위원 지명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Pool에서 위원을 지명

* 例) 특정 위원 편중 방지, 이의신청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은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

- ② (위원 경력요건 강화) 위원 경력요건을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 10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제재심의 전문성 강화

* 현행은 변호사 경력, 관계당국 근무경력, 전임강사 경력 등 중 하나를 5년 이상 요구
→ 향후 변호사 3년, 관계당국 근무경력 3년, 전임강사 4년(도합 10년)이면 요건 충족

4. 제재심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① (부의안건 과다) 대부분의 조치안이 제재심에 부의됨에 따라 심의가 과부하되어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② (효율적 진행 곤란) 대심구조 등으로 인해 제재심 장기화 사례 빈번
-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안건은 일상적인 심의 진행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 노정

* KB제재의 경우 약 2달간 6차례의 제재심을 개최하는 등 심의 장기화

(2) 개선방안

- ① (제재심 심의 생략 확대) 금감원장이 필요시 심의생략 대상에 금융회사 임직원 주의만 있는 조치안 등 경미한 사안 포함
- 제재심은 비중있는 사안에 대한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감원장 및 금융위의 제재결정을 지원
- * 현재는 검사결과, 기관주의 조치에 대하여 제재심 생략 가능
- ② (집중심의제 운영 확대)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하여 심의기간 단축
- ③ (위원 이해 제고) 세미나 등을 통해 제재절차 및 반복 위규사례 등을 제공하고 사전설명제 도입을 통해 제재심 前 충분한 논의 실시
- * 현재 증선위는 쟁점 안건에 대해 본회의 1~2시간 전에 사전보고제도 운영중

5. 제재심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① (위원 비공개 관련) 현재는 제재심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사실상 위원 명단이 외부에 노출
 - ② (조치예정내용 사전누설) 조치예정내용 사전누설금지의무가 既규정('14.9월)되었으나 여전히 조치예정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사례 발생
 - * 검사·제재규정§33③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감사와 직원은 금융위설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또한 제재심 민간위원에게는 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음

(2) 개선방안

- ① (위원 공개)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때 회의시 지명되는 위원 명단은 비공개
 - * 관련 규정 개정 및 Pool 구성 완료 이후 공개할 예정
 - ② (정보누설금지 실질화) 제재심 운영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제재심 위원의 同 의무위반을 해촉사유로 규정
 - * 例) 보안안건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 심의 시 참석자 제한, 관련 교육 강화, 안건양식 변경 등
-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6.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① (위원 제척·회피 제한적) 제척·회피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이 제한적이고 제재대상자의 위원 기피 신청제도는 미도입
 - * (제척) 안건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 등을 그 직무 집행에서 배제 (회피) 안건에 제척(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심의를 피함 (기피) 제재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
- ② (이의신청의 권리구제 효과 제한) 원조치안과 이의신청 심의위원이 동일함에 따라 내실있는 이의신청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

[2] 개선방안

- ① (위원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 제척·회피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위원의 제재심 참여 제한
 - * (현행)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개선)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법률자문, 증언·감정 또는 용역 등을 행하거나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등
 - (기피제도 도입) 제재대상자는 특정 제재심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제재심 위원장이 신청사유 및 위원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의결없이 결정
- ② (이의신청 심의 강화) Pool제를 통해 이의신청 사안은 원조치안을 심의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심의함으로써 내실있는 권리구제 도모

Ⅱ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대 효과

- ① 제재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통해
 - 보다 권위있고 엄정한 제재 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② 또한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 제재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제고하여 제재 집행의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향후 추진계획

- ① 관련 규정 변경이 불필요한 사안은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15년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 개정 완료
- ② '15년 상반기중 민간 위원 Pool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제재심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참고 Ⅲ)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2014.5.14. 보도자료)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처리절차 개선

2014. 5. 14.



금 융 감 독 원

I. 그간 추진실적 및 배경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 대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노력 중이며,
 - 우선 '13.5월 금융상품 약관심사업무에 대해 사전신고대상 축소, 약식심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 결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평균 23일→13일)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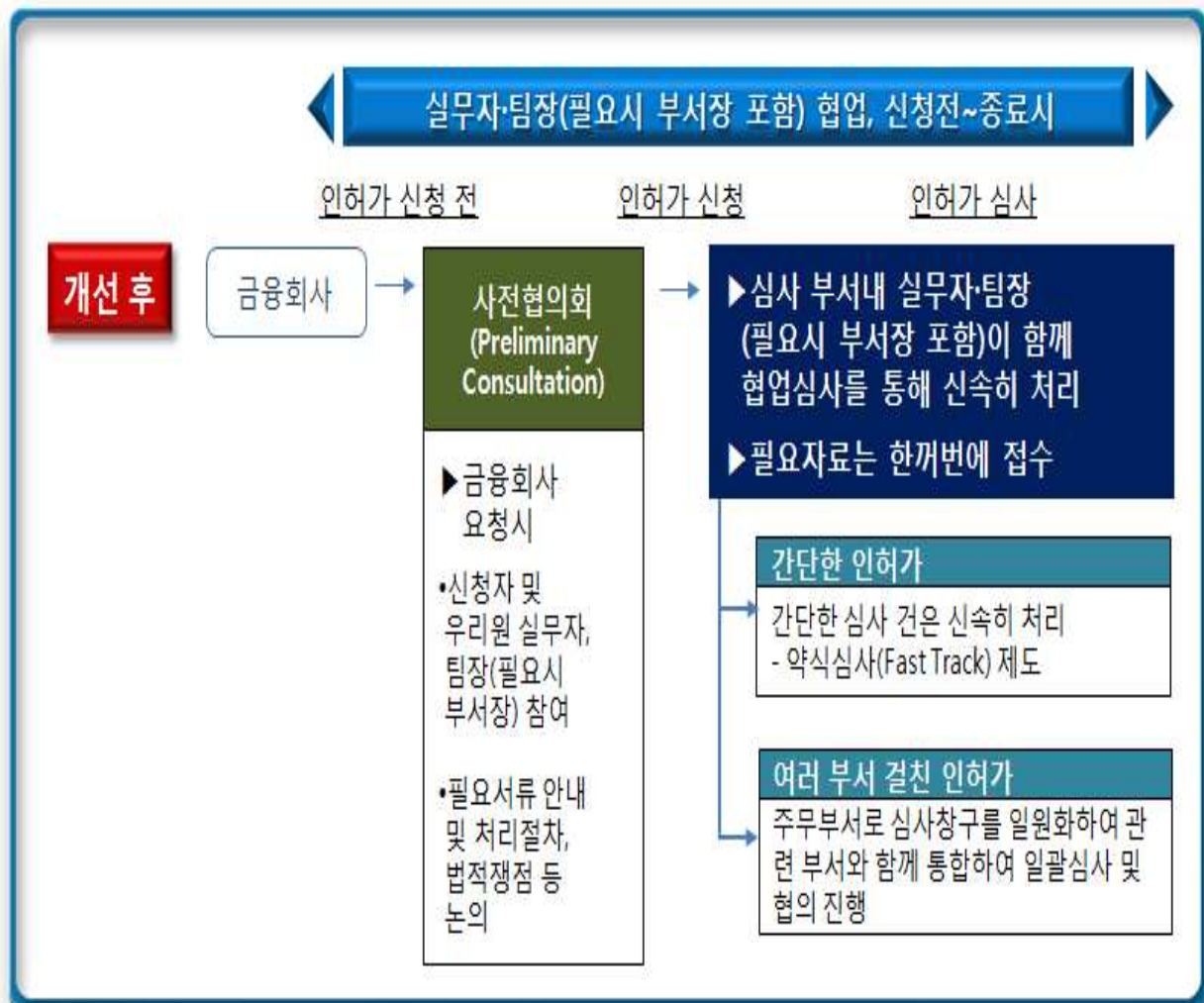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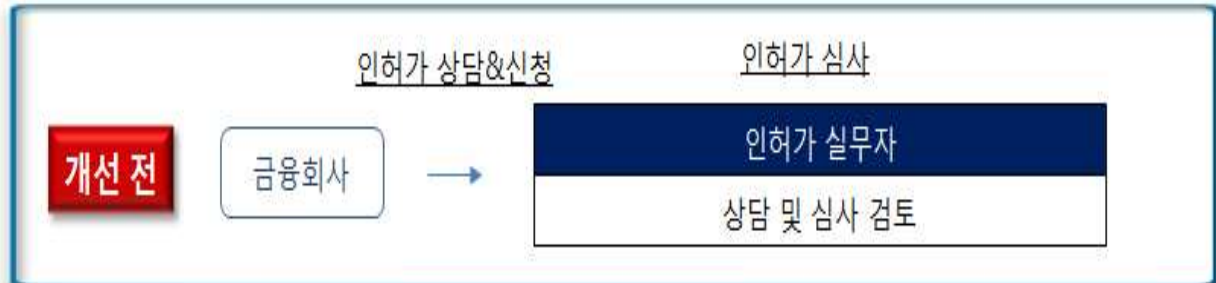
- 이번에는 금융회사의 영위업무 인허가(금융투자업 인가,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 등)·등록(투자자문업 등록 등), 각종 합병·분할 승인, 자회사 편입 신고 등의 인허가 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혁신방안을 추진하였음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총 143개(약관심사 제외)가 있으며, '13년 중 694건을 처리

- 이를 위해 인허가 신청 당사자인 금융회사를 상대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금융감독원 담당 실무자에 따라서 업무처리 방식·전문 지식·경험에 차이가 크고, 인허가 여부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없는데다 처리기간도 임의적이라는 등의 불만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방식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개선 전·후 비교



문제점		개선방안
① 인허가 신청자가 인허가 기준·절차·처리방향 등에 대해 잘 알 수 없음	→	① 인허가 사전협의제(Preliminary Consultation) 도입 *인허가 신청 전에 신청자와 금융감독원 인허가 실무자, 팀장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회'를 개최
② 인허가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 숙련도 등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임의적	→	② 인허가 부서내 담당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 방식으로 개선 *인허가 사항에 대해 부서내 실무자, 팀장(필요시 부서장 포함)이 동시에 함께 심사하고 인허가 자료는 일괄징구
③ 비교적 간단한 인허가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	→	③ 인허가 약식심사(Fast-track) 제도 도입 *인허가 접수단계에서 심사 내용이 간단한 약식심사대상의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
④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업무공조 미흡	→	④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시 심사창구 일원화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를 통합 하여 일괄 심사 및 협의 진행
⑤ 일부 인허가 사항의 법규상 처리 기한이 미비		⑤ 법규상 처리기한이 없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설정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기한 (14일)을 설정하고 동 기한 내 처리
⑥ 인허가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미비	→	⑥ 인허가 핸드북 정비(실무사례도 반영) 및 홈페이지 보완

□ 첫째,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 전 '**사전 협의제**'를 도입, 운영

- **(현행)** 인허가 신청자가 인허가 기준이나 절차, 처리방향 등을 잘 알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개선)** 인허가 신청 전에 신청자와 금융감독원 인허가 실무자, 팀장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방향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됨

- 신청자는 인허가 관련 사업계획 및 준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미비점을 금융감독원 인허가 담당자로부터 확인하게 됨
-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인허가 기준 및 절차,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신청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게 됨

□ 둘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내 담당자, 팀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 방식**으로 처리

- **(현행)** 인허가 심사가 개인별로 이루어져 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업무처리의 품질이나 태도에 차이가 발생
- **(개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내 담당자, 팀장(필요시 부서장 포함)이 동시에 함께 심사하고 인허가 필요자료는 일괄 징구함으로써 신속히 심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 셋째,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심사(Fast Track)제도**를 도입, 운영

- **(현행)** 자본금 감소, 지점설치 등 심사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에도 중요 인허가 사항에 우선순위가 밀려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 **(개선)** 인허가 접수단계에서 심사내용이 간단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

□ 넷째,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심사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현행)**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심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복설명, 유사 자료의 중복제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함

* (예시) 증권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출자승인과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가 동시에 필요

- **(개선)**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를 통합하여 일괄 심사 및 협의를 진행하게 됨

□ 다섯째, 법규상 **처리기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상 처리 기한을 설정하여 관리**

- **(현행)** 현행 인허가 사항 중 일부는 법규상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가 지연될 가능성
- **(개선)** 처리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인허가 사항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실무상 처리기한을 설정(예 : 14일) 하고 기한 준수여부를 사후관리

□ 여섯째, 인허가 **핸드북 정비 및 홈페이지 보완** 등을 통해 인허가 신청업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

- 인허가 핸드북의 관련 내용(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보다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무처리 사례를 추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e-금융민원센터의 인허가 안내 내용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완

붙임 2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본 방안 시행으로 균질화된 인허가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됨으로써 인허가 업무 처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어
 - 금융회사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금융산업의 활력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내용이 정착되도록 우선 금융감독원 인허가 담당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추진과제중 사전협의회 도입, 협업심사 및 약식심사제도, 심사창구 일원화 등 단기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 인허가핸드북 개정, 홈페이지 보완 등의 사안은 관련 내용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하반기중 완료할 계획임
- 한편 현행 인허가 사항 가운데 규제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허가를 면제하거나 완화토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부국장 고일용, 수석조사역 이종오(3145-8001, 8006)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팀 장 임채율, 수석조사역 양여원(3145-8022, 8023)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팀 장 송인범, 수석조사역 김재형(3145-6772, 6777)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감독팀	팀 장 정용걸, 수석조사역 박종춘(3145-7447, 7569)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총괄팀	부국장 황동하, 선임조사역 김시형(3145-7552, 7553)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총괄팀	부국장 김동회, 수석조사역 김동철(3145-7570, 7571)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총괄팀	팀 장 김진욱, 선임조사역 김태훈(3145-6702, 6706)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부국장 박성기, 수석조사역 김용민(3145-7450, 7451)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	팀 장 이창욱, 수석조사역 조한선(3145-8231, 8233)
복합금융감독국	신탁업무팀	팀 장 송평순, 조 사 역 박철홍(3145-8360, 8337)
IT감독실	IT감독팀	부국장 윤택중, 선임조사역 이성욱(3145-7415, 7417)
IT감독실	신용정보1팀	부국장 장웅수, 선임조사역 방종훈(3145-7428, 7431)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팀 장 이상훈, 조 사 역 민정원(3145-7922, 7924)

(참고 IV)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2014.10.30. 보도자료)

숨은 규제 혁파를 위한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2014. 10. 30.



금융위원회

I. 추진 배경

- 최근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방안”(7.10)을 발표하고 추진 중
 - 특히 금융시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령규제 외 집행기관의 숨은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음, 숨은규제 개혁없인 반쪽짜리, 금융유관기관 등 소비자가 규제로 느끼는 사각지대 개혁 필요
(VIP,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

-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숨은 규제를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행정지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건수) 현재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총 37건
(금융위 7건, 금감원 30건, `14.10.29. 기준)

* 금융위 보고 또는 전산 등록한 행정지도 중 시행일 또는 존속기간 연장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은 행정지도

- 「행정지도 운영규칙」(금융위 고시)에 따라 행정지도를 관리

< 행정지도의 개념 및 원칙(「행정지도 운영규칙」)>

- (개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
- (원칙) (i) (비례원칙)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최소한의 조치
(ii) (의견수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iii) (문서·공개주의) 원칙적으로 문서로 전달한 후 공개
(iv) (사후관리) 존속기한(1년) 설정, 매년 현황을 금융위 보고

① (행정지도 방식 미준수) 행정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로 실시하고, 이를 전산에 등록·관리해야 하나 준수되지 않는 실정

- 이로 인해 금융회사등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행정지도가 아닌 내용을 행정지도로 인식

※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행정지도가 37건임에 비해, 금융회사등이 준수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600여건인 것으로 파악

- 구두지도는 내용 및 존속기간이 불분명하여 금융회사등에 불편을 야기

② (행정지도 절차 미비)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견수렴, 사전 협의 등 절차가 권고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행이 미흡

-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중요 사안*에 한해 금융위 사무처-금감원 간 사전협의 및 사전보고 규정이 있으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이행실적이 거의 전무

* ① 해당 행정지도와 유사한 제도가 금융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여타 업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
 ② 금융회사의 업무수탁법인, 고객 등 외부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사후관리 미흡) 존속기한 연장 시 당해 행정지도를 법령에 반영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지도를 법령에 반영한 실적은 미진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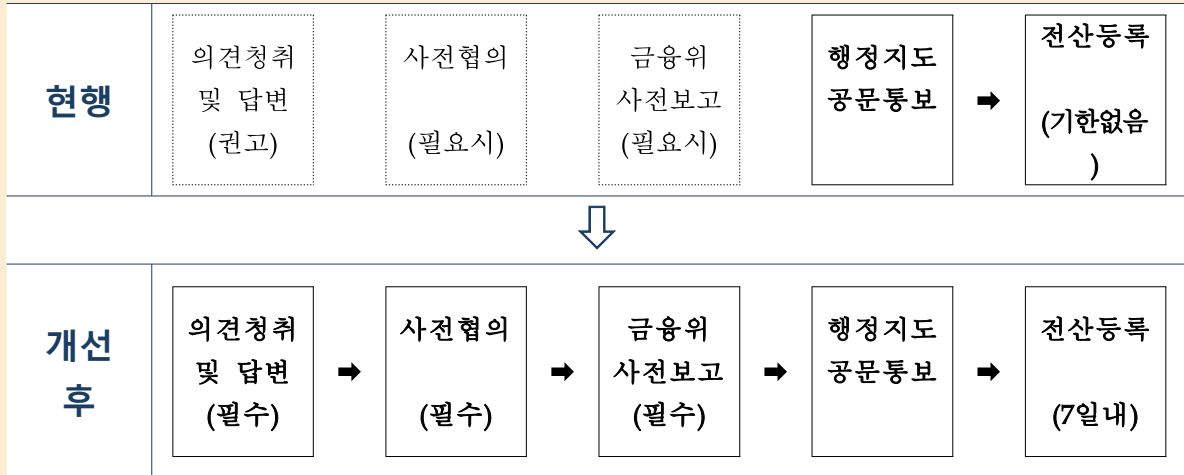
<위원장 금융현장 간담회 제기의견>

- (i) [준법감시인 간담회(4.30)] 구두지도 내용에 대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명확히 알기 어려워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사례 발생
- (ii) [외국계금융사 간담회(5.8)] 법 제정시에는 시장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때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iii) [연구기관장 간담회(5.15)] 법령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모범규준이나 감독 실무자가 금지하거나 제한했던 점이 그간의 규제개혁 실패요인
- (iv) [자산운용사 간담회(5.29)] 금감원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가 다수 존재하여 다양한 운용전략을 활용하는데 한계

III. 개선방안

< 기본방향 >

행정지도의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숨은규제 발생을 차단하여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



※ 금융규제개혁 추진과정(2014.3~6월)에서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① 구두지도는 원칙 폐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 지도
- ② 상시 규제개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체감도 제고
- ③ 일관되지 못한 행정지도, 불합리한 감독관행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중요

1 행정지도 방식에 대한 통제 강화

① 행정지도 시행 시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시

< 행정지도 공문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

- ①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②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연도별 일련번호(예: 2015-00),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구두지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두지도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구두지도의 존속기간을 단축 (1년 → 90일)

* 구두지도 허용범위

: (종전)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 ③ 기타 경미한 사안 → (개선) ②, ③ 삭제

③ 행정지도 신설·변경·폐지 후 7일 이내에 (가칭)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하도록 금융당국의 전산등록 기한을 명시

2

행정지도 절차 구체화

① 의견청취 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

-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할 것을 권고
 - 단, 긴급한 경우 등에 한해 금융당국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이 가능

② 금융위 사전협의·사전보고 대상 확대 (중요사안 → 모든 행정지도)

- 예외적으로 사후보고를 허용하되, 존속기간은 6개월로 한정

③ 금융위 보고 시 필수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금융위 보고 시 필수 보고사항 >

① 실시사유 및 내용, ② 관련 법령, ③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 결과, ④ 의견청취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 ⑤ 금융당국 간 상호협의 결과, ⑥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⑦ 존속기간, ⑧ 추후 법령 또는 규정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 필요 시의 반영 계획

3

사후관리 강화

- 행정지도가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

* 법률은 법률안 국회제출 시 법률안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가능하며, 시행령 이하 규정은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IV. 향후계획

①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정안 금융위 의결('14.10.29)

② 금융규제민원포털 구축('14.12월)

Ⅰ 금융위 행정지도 : 7건

연번	행정지도 제목	시행일 (연장일)	소관부서	비고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안내	2014.6.3.	전자금융과	홈페이지 게시
2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	2013.12.30	전자금융과	홈페이지 게시
3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승인 전 모집경로 확인에 관한 행정지도 시행방안	2014.1.26	서민금융과	금융위 의결
4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행정지도 시행방안	2014.1.26.	서민금융과	금융위 의결
5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관련 행정지도안	2014.4.4.	금융정책과	금융위 의결
6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을 위한 행정지도	2014.4.16.	금정과, 은행과, 보험과, 중소과	금융위 의결
7	CD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2014.7.16.	금융시장 분석과	금융위 의결

② 금감원 행정지도 : 30건

연번	행정지도 제목	시행일 (연장일)	소관부서	비 고
1	위기상황분석모범기준	10.4.1. (14.2.19.)	보험감독	금융위 의결
2	위기상황분석모범기준	10.4.1. (14.2.19.)	금융투자	금융위 의결
3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모범기준	11.4.1. (14.2.19.)	감독 총괄	금융위 의결
4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기준 제정, 시행	12.3.5. (14.2.19.)	여신 전문	금융위 의결
5	카드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추가대책 시행	12.3.23. (14.2.19.)	여신 전문	금융위 의결
6	금융지주회사의 그룹내부통제기준 모범기준	12.4.1. (14.2.19.)	감독 총괄	금융위 의결
7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기준	12.4.1. (14.2.19.)	감독 총괄	금융위 의결
8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기준” 변경 통보	13.12.11	감독 총괄	금융위 의결
9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기준 개정내용 통보	13.11.27..	보험 감독	금융위 의결
10	공매도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13.12.17..	금융 투자	금융위 의결
11	외국계금융회사의 국내영업단위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모범기준	07.9.17. (14.4.30.)	감독 총괄	금융위 의결
12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기준	08.1.1. (14.4.30.)	연금 감독	금융위 의결
13	겸영 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09.2.4. (14.4.30.)	복합 금융	금융위 의결
14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한 건설회사 PF 관련 우발채무 공시	10.7.1. (14.4.30.)	금융 투자	금융위 의결
15	증권사 금전신탁의 대출채권 매입 관련 유의사항	10.7.27. (14.4.30.)	복합 금융	금융위 의결

연번	행정지도 제목	시행일 (연장일)	소관부서	비 고
16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11.6.21. (14.4.30.)	여신 전문	금융위 의결
17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	11.7.1. (14.4.30.)	복합 금융	금융위 의결
18	특수목적법인과외 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유의사항 통보	11.7.11. (14.4.30.)	은행 감독	금융위 의결
19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11.8.1. (14.4.30.)	복합 금융	금융위 의결
20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유의사항 통보	14.2.25.	금융 투자	홈페이지 게시
21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변경 통보	14.2.28.	감독 총괄	‘10.2.17. 시행내용 변경
22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14.3.31.	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게시
23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통보	14.4.4.	은행 감독	홈페이지 게시
24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통보	14.4.4.	보험 감독	홈페이지 게시
25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행정지도	14.5.1.	감독 총괄	홈페이지 게시
26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	14.8.1.	은행 감독	홈페이지 게시
27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	14.8.1.	보험 감독	홈페이지 게시
28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	14.8.1.	상호 여전	홈페이지 게시
29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	14.8.1.	저축 은행	홈페이지 게시
30	민원발생 평가등급의 금융회사 영업점 게시	14.10.14.	소비자보호 총괄	홈페이지 게시

①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정('07. 7.)

- (배경) 행정지도 남용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감독 행정의 투명성 강화
- (주요내용) 행정지도 일몰제(원칙적으로 1년 초과 불가) 실시, 존속기한 연장·중요 행정지도 사전보고, 사후관리 현황 보고 등

②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 마련('10. 4.)

- (배경)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행정지도와 금융회사가 준수하는 행정지도 간의 차이를 줄여 금융회사의 행정지도 이행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금융회사가 행정지도를 타 법령등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에 '행정지도'임을 명시, 존속기한 통보 등

<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

-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게 '행정지도'임을 명시하여 통보
- ②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간 사전협의 절차 신설 및 협의대상 구체화
- ③ 행정지도 시 존속기한을 금융회사에 통보토록 하고,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금융위(증선위) 보고 시 법규화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참고 V)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2014.12.30. 보도자료)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2014. 12. 30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I. 추진 배경

□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행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비명시적 규제(숨은 규제) 요인 개선 필요

○ 명시적인 법령규제 외에 금융현장에서 규제준수 비용을 유발하는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공문·구두지도 등을 발굴·정비 필요

* “금융규제개혁방안”(14.7.10)에서 금년 말까지 행정지도 정비를 추진기로 함

○ 또한, 검사매뉴얼·해설서도 피검회사 입장에서는 영업행위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수검자 입장에서 수정 개편 필요

□ 지난 11월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은행권에 대해 가이드라인·검사매뉴얼 개편방안 마련 및 정비완료

※ 은행권 정비결과 (※ 다른 업권은 금년 말까지 정비를 추진기로 함)

◆ (모범규준·공문·구두지도 등) 총 102건 중 31건 폐지, 70건 업계 자율운용, 1건은 공식절차를 거쳐 등록 운용

◆ (검사매뉴얼) 금융회사 입장에서 알아야할 내용 위주로 대폭 축소·보완(‘15년 상반기)

※ 가이드라인·검사매뉴얼 개편 기본 방향

▶ (가이드라인) 기존 모범규준, 지침 등을 일괄 점검하여 원칙 폐지 또는 자율운영 하되, 필요시 공식화(등록) 또는 법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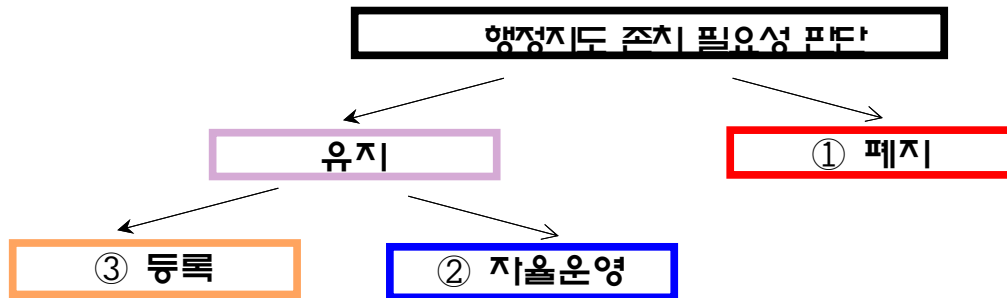
▶ (검사매뉴얼) 금융회사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할 내용위주로 재정비하고, 분량도 대폭 축소(은행의 경우 약 3천→ 1천쪽 이하)

* 특정 사건·이벤트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가되었던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 후 삭제·보완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때 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편의 제고

⇒ 은행권 정비 결과를 참조하여 보험, 자본, 중소기업 등 모든 업권의 행정지도(가이드라인)와 검사매뉴얼에 대한 정비 방안 마련

Ⅱ. 업권별 가이드라인 등 주요 정비결과 및 계획

1 가이드라인 등 정비 기준 및 결과



※ “폐지”와 “자율운영”의 차이 : “폐지”의 경우今日 이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자율운영”의 경우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내부징계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기관 제재는 하지 않음

□ 전업권 숨은규제(총 680건) 정비결과, 폐지* 291건(42.8%), (업권, 협회 등) 자율운영 359건(52.8%)

* 폐지 판단기준 : (Ⅰ) 정책목표 이미 달성, (Ⅱ) 제정후 많은 시간 경과하여 운영실익이 없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 (Ⅲ) 관련 법령 등에 이미 반영 등

○ 존속필요가 있어 공식화(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35건(5.1%)

< 업권별 숨은 규제 정비 결과 >

	보험	자본	저축	여전	상호	서민·신용정보	전금	소비자	금융정책	합계	은행	합계
폐지	48	34	24	41	28	19	57	3	6	260	31	291
자율운영	22	24	77	78	-	12	49	20	7	289	70	359
존속(등록)	4	18	3	-	-	2	2	-	-	29	1	30
합계	74	76	104	119	28	33	108	23	13	578	102	680*

* 당초 검토대상으로 파악되었던 778건 중 중복되거나 기등록된 건 제외

2 업권별 주요 정비결과

- ① (은행) 총 102건 중 31건 '폐지', 70건은 업계 '자율운영'인 것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1건

* 주요 폐지 사례

- ①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으로 등록)
- ② 불합리한 차별행위방지 모범규준 필요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운용가이드라인에 반영
- ③ 영업점장 전결금리제도 등 개선협조요청(정책목표 달성)
- ④ 보증서담보 여신금리 결정에 대한 제한(구두지도)
- ⑤ 대출목표이익율 등의 결정에 대한 제한(구두지도)

- ② (보험) 총 74건 중 48건 '폐지', 22건은 업계 '자율운영'인 것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4건

* 주요 폐지 사례

- ① 보험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으로 등록)
- ② 생명보험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으로 흡수)
- ③ 생명보험 보험계리 모범규준(최초 제정이후 법규로 대부분 이전)
- ④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철저이행 당부(감독규정 개정으로 반영)
- ⑤ 보험금 부지급률 등 공시이행 당부(법규에 기반영)

- ③ (증권) 총 76건 중 34건 '폐지', 24건은 업계 '자율운영'인 것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18건

* 주요 폐지 사례

- ① 공매도 가이드라인 (금융투자업규정에 대부분 수용)
- ②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으로 흡수)
- ③ 금융투자상품 통일공시기준(정책목표 이미 달성)
- ④ 장외파생상품 투자설명서 손실가능성 명시 권고모범규준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반영
- ⑤ 성과연동 운용보수 추진(시장자율에 맡김)

④ (중소서민) 총 284건 중 112건 '폐지', 167건은 업계 '자율 운영'인 것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5건

○ (저축은행) 총 104건 중 24건 '폐지', 77건은 업계 '자율운영'인 것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3건

* 주요 폐지 사례

- ①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 지도 요청(운영 실익 떨어짐)
- ② 캠프매각 PF대출에 대한 총당금 적립 등 유의사항(운영 실익 떨어짐)
- ③ MS현금카드의 자동화기기 사용중단 관련 유의사항(정책목표 충분히 달성)
- ④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예금상품 핵심설명서 운영 철저 지도 요청(법령 기반영)

○ (여전) 총 119건 중 41건 '폐지', 78건은 업계 '자율운영'으로 명확화

* 주요 폐지 사례

- ① 부가서비스 축소 상품에 대한 고객 고지 강화(관련 법령 기반영)
- ②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관련 유의사항(관련 법령 기반영)
- ③ 기프트카드 잔액 확인 및 환불 절차 개선 요청(정책목표 충분히 달성)

○ (서민·상호·신용정보) 총 61건 중 47건 '폐지', 12건은 업계 '자율운영'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2건

* 주요 폐지 사례

- ①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3)으로 대체가능)
- ② 신탁재무상태개선조치 운용지침(정책목표 달성)
- ③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 통보방법 변경 관련(관련 법령 반영)

⑤ (기타) 전자금융, 소비자, 금융정책 관련 분야 총 66건 폐지

○ (전금) 총 108건 중 57건 '폐지', 49건은 업계 자율운영인 것으로 '명확화', 향후 공식적인 '등록' 필요 2건

*** 주요 폐지 사례**

- ① 현금카드 복제사고 방지를 위한 IC현금카드 활성화 방안 송부(공문지도)
- ② 키보드해킹방지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 취약점 점검요청(공문지도)

○ (소비자) 총 23건중 3건 '폐지', 20건은 업계 '자율운영'으로 명확화

*** 주요 폐지 사례**

- ① '06.9월 제정된 소비자보호 모범규준('14.3.31 개정·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으로 대체)
- ② '10.4월 제정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14.9.30 개정·시행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으로 대체)

○ (금정) 총 13건 중 6건 '폐지', 7건은 업계 '자율운영'으로 명확화

*** 주요 폐지 사례**

- ① 주택담보대출 연착륙관련 금융애로 해소 협조요청(은행)(공문지도)
- ②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LTV)재평가에 관한 협조요청(은행)(공문지도)

3 향후 계획

① 금융당국에 의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 모범규준의 경우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설정하여 기한경과 후 자동 폐기(필요시 등록 또는 법규화 절차를 밟아서 연장)
- 지도공문의 경우 행정지도임을 명시하고 '연번'을 부여하는 등 통합관리체계를 갖추어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공개
- 구두지도의 경우 今日부터 폐지(효력상실)하며 → 향후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되, 불가피한 구두지도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금번에 검토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는 일괄폐지

③ 업계 혼선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15.1월중 업권별로 설명회 실시

Ⅲ. 업권별 검사매뉴얼 개편방향 및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효율적 검사업무 수행과 금융기관의 내부감사업무 참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검사 실무지침서

* 현행 검사매뉴얼은 2011년 11월 권위주의적 검사관행 타파 등 금융 감독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개편 되었으며 분기별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짐

□ (문제점) 방대한 분량, 법규에서 정한 사항 외 광범위한 점검사항 나열, 환경변화 미반영 등으로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

○ 특히, 검사업무, 업권 개요 등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분량이 방대

< 업권별 검사매뉴얼 현황 >

업권	업무단위		분량
	매뉴얼명	내용	
은행	은행검사매뉴얼	검사업무전반, 자산분야, 부채 및 자본분야, 기타 분야, 경영실태평가, 신용정보업,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3000p
보험	보험검사매뉴얼	검사계획수립·착수 등 업무처리절차, 자산운용규제 등 단위업무별 체크리스트·검사기법 등 기술	1098p
자본	금융투자검사매뉴얼	검사계획 수립·착수 등 업무처리절차, 세부 업권별·단위업무별 체크리스트·검사 기법 등 기술	1709p
저축 은행	상호저축은행 검사매뉴얼	검사업무, 자산, 부채 및 자본, 내부통제, 경영실태평가, 적기시정조치, 기타	751p
대부업		검사업무, 대부, 자금조달	45P
신용 정보	신용정보회사 검사매뉴얼	업무개요, 업무적정성 체크리스트	30p
상호 금융	상호금융 검사매뉴얼	검사업무, 자산, 부채 및 자본, 내부통제, 경영실태평가	966p
여신 전문	여신전문금융 검사매뉴얼	검사업무, 자산, 부채 및 자본, 내부통제, 경영실태평가	848p
전자 금융	IT 검사매뉴얼	검사계획수립·착수 등 업무처리절차, IT감사, IT경영시스템 개발·도입·유지보수,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 IT실태평가 부문별 업무개요, 체크리스트 등 기술	633p

가. 개선방향

- 금융회사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재 정비하고, 분량 대폭 축소
 - 단순한 설명·정보전달 사항은 연수 교재 등의 형식으로 금감원 내부참고자료로 분리하여 활용(비공개)
 - 실무적으로 자주 지적되거나 제재가 빈번한 검사항목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사매뉴얼 수시 업데이트
 - 실무와 괴리되어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검사에 활용되지 못하는 불필요한 검사항목을 발굴·시정
 -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적 검사항목과 변경된 법규 등은 향후 금융업계의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지속 정비
- 해설서의 경우에도 반기별로 업데이트 필요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 필요성·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원칙 폐지

나. 향후 계획

- 금감원 주관으로 업권별 매뉴얼 전면개편 → 2015년 금감원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15년 상반기 중 완료
 - 「매뉴얼 혁신 작업반」을 구성*하여 업권별 실무작업 진행
 - * 금감원(감독총괄국, 업권별 검사·감독국) 및 업권별 협회 등

< 매뉴얼 개편계획 >

- 금감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15.6월 완료
 - '15.1~2월 작업반 구성, 정비대상 매뉴얼해설서 목록정비 및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
 - '15.3~5월 혁신매뉴얼 초안 작성
 - '15.6월 혁신매뉴얼 확정* 및 발표(공시)
 - * '15.4월 완료(발표) 예정인 은행권 혁신매뉴얼과의 공통영역에 대해 일관성 확보

⇒ 검사매뉴얼 개선실적을 '15년 하반기 중 대외발표

(참고 VI)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

(2014.10.21. 보도자료)

적극적인 금융행정 실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

2014. 10. 21.



금융위원회

I. 추진 배경

- 최근 금융위는 창조금융 활성화등을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7.10), “금융혁신 실천계획”(8.26) 등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당국의 제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
 -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법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 금융감독 기능은 “사후 적발 및 제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지원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전환 예정
 - 즉, 금융회사의 사후제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해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중점
- 이를 위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유권해석 제도,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

※ 참고 : 비조치의견서의 개념과 효력

- ◇ (개념)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써
 - 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금융회사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해주기 위해 도입
- ◇ (효력) 금융위 위원장(또는 금감원장)이 심사청구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배제

II. 제도운영 현황 및 평가

1 제도운영 현황

- ◇ 금융당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를 접수
 - 통상 개인은 온라인 “공식”채널,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 (이하 “금융회사등”)은 오프라인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요청
- ◇ 금융회사등의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활용 실적은 낮은 편

① (접수경로) 접수 건의 약 95%는 온라인 정부민원 채널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며, 나머지는 공문, 이메일 등으로 접수

- 특히 금융회사등은 국민신문고보다 금융당국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서신·구두로 질의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

< 참고 : 유권해석 요청 건 처리실적 경과 (단위 :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민신문고	189	501	849	937	687
공문 접수	23	36	15	18	34
계	212	537	864	955	721

* 국민신문고 이용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 이상

② (처리절차) 국민신문고 접수 건은 국민권익위가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경로 접수 건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담당자가 접수 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소관부서에 배분하고, 담당부서가 민원인에 회신

* 민원유형 : 일반질의, 법령질의, 국민제안, 고충민원 등

- 유권해석 요청 건에 대한 회신은 14일 내(비조치의견서의 경우 30일) 이루어지며, 진행상황을 이메일 또는 SMS로 공지

- (그 외 경로 접수) 소관부서가 직접 접수·회신

③ (실적) 금융회사등의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활용이 저조

- (유권해석) 최근 3년간 금융회사등의 공문 접수는 연평균 약 23건이나, 금융당국에 대한 개별적 구두질의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
- (비조치의견서) '05년부터 금융업 전 권역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은 미흡한 수준

*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05.6) 제정

** 운영실적(단위: 건) : ('05, '06) 3 → ('08) 1 → ('09) 1 → ('11) 2 → ('13) 1

2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

① (금융회사의 고충)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답변 회피 또는 소극적 대응 등으로 인해 질의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는 실정

- 금융회사는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나, 금융당국은 구두로 질의할 것을 요구
-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소극적
- 금융위, 금감원 간 질의요청 건 떠넘기기 행태로 인해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부담 발생

② (금융당국의 고충) 회신내용에 대한 금융당국 실무자의 책임부담이 높지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운 현실

- 금융회사는 산발적으로* 질의하고, 로펌은 자체 해결가능한 내용까지 질의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예 : 동일 금융회사의 영업점들이 동일한 내용을 질의

- 또한 금융회사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에 애로

③ (인프라 미흡) 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관리
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것이 곤란

- 회신 이력을 관리하지 않아 담당자 변경 시 해석이 달라지는 등
해석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
- 또한 금융회사등이 유사 사례를 다시 질의함에 따라 금융당국·
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④ (비조치의견서 활용 미흡) 금융회사등의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가 저조

- 약 10년 동안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수요자의
상당수가 비조치의견서를 모르는 실정
-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간 차이가 모호*하여 수요자가
비조치의견서를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곤란

*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의 제재여부 판단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실제 유권해석 요청도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를 묻는 내용이 다수

<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요청 예 >

- ◇ (유권해석 예)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대행인과 계약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가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비조치의견서 예) 증권회사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지정참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TF 설정, 해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반여부

III. 개선방안

1 금융회사등과 금융당국 간 소통 활성화

◇ 금융회사등의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경로를 (가칭)“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일원화하고, 관련하여 금융위에 담당부서를 지정

① 금융회사등의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이하, 유권해석등) 요청 경로를 종전의 비공식적 접촉에 의한 공문 또는 구두질의에서 “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일원화

※ 개인은 종전대로 국민신문고를 이용

②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전달체계를 정비

○ 금융회사등의 질의 창구를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으로 단일화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접수·회신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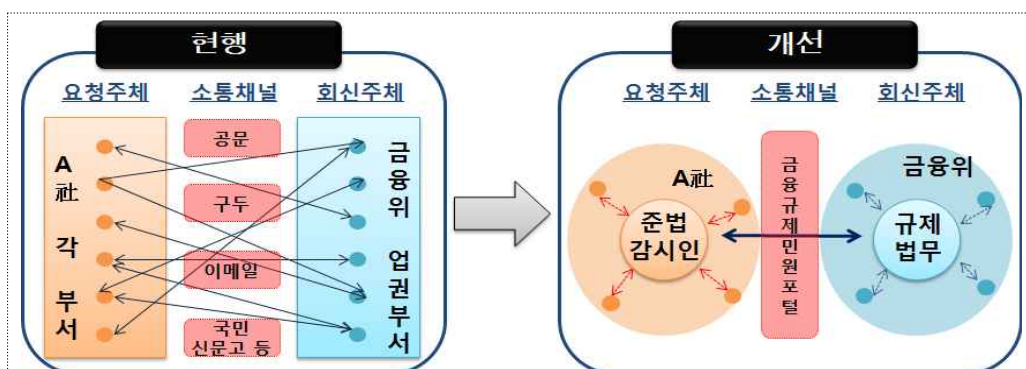
* 시행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요청 건은 금감원에 배분 → 금감원 회신

○ 금융회사등은 금융당국이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질의내용을 작성

* 유권해석 요청 시 작성사항 : ① 질의요지, ②질의배경, ③ 해석대상 법령 조문, ④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⑤ 준법감시인 검토의견, ⑥ 관련 법령 등

○ 금융회사등은 접수된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

< 금융회사등과 금융위 간의 소통채널 개선 >



2

유권해석의 내부 검토절차 강화

- ◇ 현장감있는 유권해석을 위해 금융위 유권해석 시 금감원 의견을 조회
- ◇ 유권해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설치

① 금융위 실무부서는 검사·제재 등과 관련된 유권해석 사안에 대하여 금감원에 의견 조회 실시

- 유권해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금융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금감원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

② 중요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장 소속의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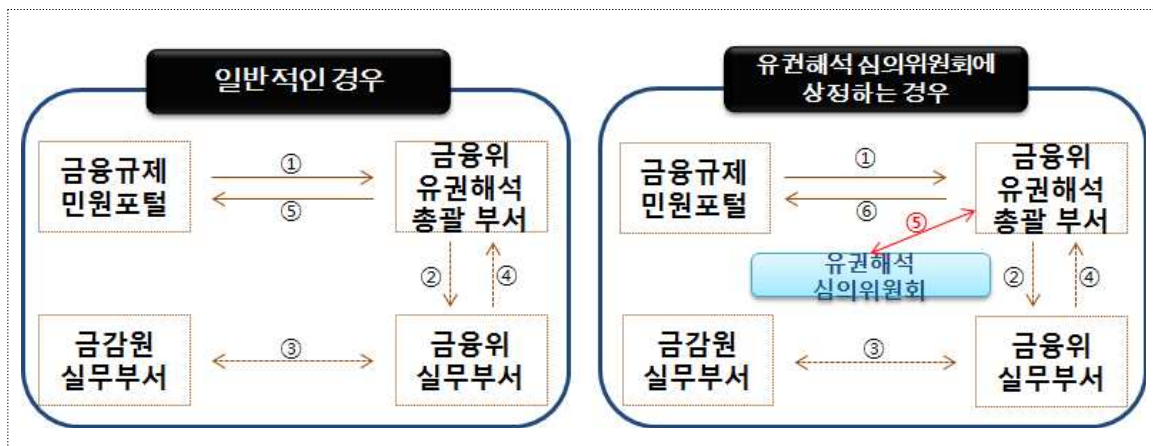
<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상정이 필요한 중요사안(안) >

- ◇ 유권해석 사례들 간 또는 유권해석 사례와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
- ◇ 유권해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 ◇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예 : 금융시스템적 위험, 소비자보호 등)
- ◇ 비조치의견서 관련하여 금감원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구성안(안)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금융위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금융위 법률자문관 1명, 금감원 1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고 주심(主審)제도를 도입

< 유권해석 내부처리절차 >



- ◇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활용 촉진을 위해 조직 내·외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권해석 회신사례 관련 정보인프라를 구축
- ◇ 개선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

① 제도 홍보 강화

- 준법감시인 워크숍, 금융회사등에의 정기적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제도개선 취지를 전달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
-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하고, 금융회사등 실무자들의 유권해석등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피드백
- 우수사례 및 유권해석등으로 인한 규제개선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

② 유권해석등 회신사례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하는 등 정보인프라 구축

- 과거('10~'14) 금융위·금감원 회신내용을 DB화하고, 반기별로 「금융법규 유권해석집」을 온라인 상에 게재

③ 금융위·금감원의 유권해석 총괄부서는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현황을 매년 점검*하여 금융위에 보고

* 점검대상 : 접수·회신 실적, 주요 회신사례, 특이사항 등

- 금융회사등의 요청에 대한 금융당국의 소극적 행태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등 실시*

* 매년 금융규제정비의 달(9월)에 점검결과를 외부에 공표

④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내에 “유권해석 지원팀”을 신설

- 업권별 법률전문가로 구성하며, 금융위 업권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법적 지식*을 제공

* 기존 회신사례 중 유사사례 및 관련 학설·판례, 법령 개정연혁, 입법취지 등

① (대상) 금융환경 변화(新금융상품 개발, 新사업영역 진출 등)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 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특정행위의 제재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

② (작성사항) 유권해석과 달리 비조치의견서 요청 시에는 “사안에 기존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특징

<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시 작성사항 비교 >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질의요지, 관련법령	좌동
질의배경	질의배경 (계획하고 있는 행위에 한함)
해석대상 법령, 대립되는 의견	제재가능성 관련 법령
-	新금융상품 개발, 新사업영역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③ (절차) 금감원에서 처리·회신*하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회신

- * 종전에는 제재권한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으로 소관을 구분하였으나, 1차 검사·제재기관인 금감원으로 소관을 일원화

< 비조치의견서 처리 절차 >

금융위 접수 후 금감원에 배분 →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유권해석(조치가능 여부 판단 포함)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작성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금융위에 사전보고 → 금감원 회신

IV. 추진일정

정책 과제	완료시기	소관
1.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소통 활성화		
1-1. 금융규제 민원포털 구축	'14.12.	규제 법무
2.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성 제고		
2-1. 근거규정(고시) 마련 :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 개정	'14.12.	규제 법무
2-2.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설치 - 외부 법률전문가 위원 위촉 등	'14.12.	규제 법무
3.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1. 준법감시인 간담회	반기 별 실시	규제 법무
3-2.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	'14.12.	규제 법무
3-3.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내용 DB화	'15.8.	규제 법무
3-4. 「금융법규 유권해석집」 발간	'15.8.	규제 법무
3-5.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현황 점검	매년 8월	규제 법무
3-6. 유권해석 지원팀 신설	'15.상	행정 인사
4. 비조치의견서 제도 재정비		
4-1.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 개정	'14.12.	규제 법무

(참고 Ⅶ)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2015.2.10. 보도자료)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 “신뢰·역동성·자율과 창의” 등 3대 기조 하에
“5대 부문 25개 과제” 역점 추진 -
-

2015. 2. 10.



금 융 감 독 원

1. 금융감독의 혁신 및 역량 강화

◆ 금융회사들이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 혁신

1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 존중

- ①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

* (예시)

-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동 기준 범위 내에서는 금융회사의 결정 존중

- ② 동시에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

- 금융위·금감원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허가, 질의회신 관련 일원화된 처리절차 구축으로 금융회사의 불편 최소화

* (예시)

- 불명확한 법규 및 신사업·신상품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 금융회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민원포털 구축 등

2 차별적 감독 강화

- ① 획일적 감독으로 인해 우량회사가 성장을 제약받지 않도록 금융업권별·금융회사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을 강화

-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 확대

* (예시)

- 경영실태평가 일정등급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규제 완화 적용

- ②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금융업종 또는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

* (예시)

- 자산운용업에 대한 NCR 규제 및 경영실태평가 적용 배제(기 조치)
- 대형 금융회사 기준으로 마련된 일률적인 경영·상품 공시기준 및 보고서 제출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3 건전성 유자·소비자 보호·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감독기준 유지

- ① 과도한 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 중개기능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선

-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 기준과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중복되거나 과도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

* (예시)

- 금융투자회사들이 과도한 수준의 NCR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 ② 국제적 논의결과로 신규 도입 또는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가 금융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마련

* (예시)

-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 보험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18년)

- ③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금융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감독방식은 개선

* (예시)

-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개선('빨간 딱지' 폐지 포함 공표방식 등 정비)하여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로 전환
- 미스터리쇼핑 운용방식 개선 등

4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지원

① 금융위와 협업하여 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 실효성 있게 추진

- 특히,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종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의 발굴, 폐지(개선)에 주력

* (예시)

- 금감원에 금융회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신설

② 금융과 ICT 융합현상을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핀테크(FinTech) 지원 강화

-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핀테크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을 적극 해소
- 핀테크의 실용화를 통해 핀테크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 금융회사의 핀테크 산업 참여 확대방안 모색

* (예시)

- 핀테크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사후점검 방식으로 전환
- '핀테크 기술진단포럼' 수시 개최, 금융회사의 '핀테크 관련 자율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핀테크업체와 금융회사간 접목의 場 마련
- '핀테크기업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또는 업무제휴 지원방안 검토

③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감독 차원에서 적극 지원

- 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영업행위에 대한 간여 자제

* (예시)

- 새로운 방식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규보완후 대응하고, 현행 법규를 확대 해석하여 제재하는 방식 지양

④ 금융회사의 해외 新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 (예시)

- 해외 진출 금융회사(지점, 현지법인)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 시행)
- 현지 감독당국과의 MOU 체결, 교류 세미나 개최 확대

5 금융 감독업무 역량 강화

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위 등 유관기관에 건의

- 현장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일선 감독기구로서의 역할 완수 및 사전적 감독역량 축적

* (예시)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검토, 금융위에 제공
- 검사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 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 대안 제시
- 해외 감독기구 및 한국은행·예보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② 역량있는 직원들이 금융감독과 검사부서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 (예시)

- 감독·검사업무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감독 우수보고서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2.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의 쇄신

◆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

1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및 현장검사의 축소

① 관행적(예: 매 2년 주기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

-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경영상태 취약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예시)

- 관행적 종합검사 : (최근 3년평균) 38.5회 → (2015년) 21회 → (2016년) 10회 내외 → (2017년 이후^{주)}) 원칙적으로 폐지

주) 구체적인 폐지시기는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상시감시기능 보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②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점검

* (예시)

- 대부업체 검사 등 신규 검사수요에도 불구하고 '15년중 총 현장 검사 횟수를 '14년의 검사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

③ 종합·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 및 상시감시 기능 강화

* (예시)

- 업권별 특성, 회사규모, 리스크실태,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강화

■ 2 문제소지 부문 중심의 선별적 검사 강화 및 엄중 제재

- ① 금감원 검사를 통해 모든 위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 강화
 - 금융회사의 경영 및 영업행태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대상 부문·회사를 선별

* (예시)

-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 저해행위,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등을 집중 감시

- ②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제재

* (예시)

- 중대 위규사항이 다수·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일부 또는 전부), '정직', '임원 해임권고'까지 부과(건의)

■ 3 검사·제재 시스템의 개선

- ① 검사매뉴얼 및 검사프로세스 전면 개선, 주기적인 검사품질 관리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검사품질을 제고

* (예시)

- 검사매뉴얼을 핵심사항 위주로 축소하고, 검사요구자료의 표준화·간소화 추진
- 동일 금융회사를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검사

- ②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제재양정기준 합리화 및 시효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 제고

* (예시)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부당 지급 등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마련
- 검사대상기간을 일정기간 이내(예: 5년)로 운영

■ 4 검사·제재 방식의 전환

- ① 부실여신 등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보다는 여신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을 전환

- 부실여신 면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유도

* (예시)

- 여신취급절차를 준수한 경우 사후부실에 대해 면책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

② 직원 및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를 의뢰(자율조치 확대)하고 현지조치를 활성화

* (예시)

- 법규에서 정한 중대 위반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 의뢰

③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보다는 금전적·기관중심의 제재를 확대하여 실효성 확보

- 동시에 신규업무 제한이나 M&A 불승인 등과 같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제재방식을 지양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한 실질적 불이익 부과방안 모색

* (예시)

- 금융위와 협의하여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 확대방안 추진

5 자율에 상응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①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강화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사후적으로 자체 감사기능 및 감사활동의 적정성 점검에 주력

* (예시)

- 은행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쉼 금융권으로 확대

② 내부통제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

* (예시)

-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 → 검사주기 완화 및 자체 시정 인정
- 내부통제 미흡 금융회사 → 금융사고 발생시 엄정한 책임 부과

3.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 금융시장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기능 강화

①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정보기능을 강화

* (예시)

- 여러 부서로 분산된 금융감독정보를 집중관리하는 등 「사전예방 금융 감독시스템」 강화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전세대출 동향 점검 및 高LTV대출, 집단 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점검 강화
- 시세가 고시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LTV 산정 실무기준을 정비하여 LTV 평가방식의 정확성·일관성 제고
- 특정 금융상품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②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 (예시)

- 특정국가 편중리스크 및 은행 등의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점검 강화
- 미 기준금리 인상, 엔저 심화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기재부·금융위·한은과 경기상황 인식, 대응방향 모색 등 협력 강화

■ 효율적 구조개혁 추진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적극 해소

①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 (예시)

- 공급과잉 등 구조적 취약산업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유도
- 주채무계열의 재무위험 분석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 자구노력 유도

② 개별 기업의 문제가 산업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부실기업 발생시 즉각 대응

- 정상화가능 기업에는 '적시에 충분한' 자금 공급 유도

* (예시)

- 약정체결계열 등에 대한 부당한 여신회수가 없도록 여신변동내역 월별 점검 등 기업금융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

■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① 국제적 규제체계에 부합한 건전성 감독기준 정비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기반 확충

* (예시)

-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 대비 국내 건전성 기준 정비
-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도입방안 마련
-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시범 실시

② 미시건전성 감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감독의 유효성을 제고

* (예시)

- 금리상승 등 급격한 거시경제 충격에 대비한 스트레스테스트 지속 실시
- 외환시장 리스크 등 최근 금융환경을 반영한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4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 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제재 부과

* (예시)

- '내부감사 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업권별로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집중 점검
- 금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책임에 상응한 제재를 부과하되, 내부통제책임자의 책임 강화

- ②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보장

* (예시)

- 금감원에 금융상황 파악 및 조기대응 전담조직 운용

5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

- ① 주식불공정거래,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의 질서 문란 행위를 발본색원(拔本塞源)

* (예시)

- 정보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조사 강화
-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 및 중점감리 대상 사전예고를 통한 테마감리 실시
- 금감원의 회계감리조직 개편 및 인력 보강

- ②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 (예시)

- 위장 외국인투자자 및 재산은닉·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조사

4. 금융적폐의 청산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및 금융중개 기능 활성화

◆ 금융권에 누적된 폐해를 청산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 보신적 금융관행의 쇄신

- 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하게 하는 금융현장의 요인을 전면 점검하여 합리적 개선 유도

* (예시)

- 금융위와 협업하여 금융혁신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책 강구
- 금융권의 보신적 금융관행 쇄신 노력을 감독·검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

- ② 동시에 기술금융 및 관계형 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방안 마련

* (예시)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유도
- 관계형 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사례 발굴·전파

2 대포통장 발급 근절

- ① 금융비리·사고의 원인이 되고 금융불신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발급 근절을 위해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예시)

-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융회사의 통장 남발 관행을 전면 쇄신
- 금융회사 CEO 주도하에 장기 미사용 통장 정리 등 대포통장 발생 요인 해소

②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포통장의 공급·이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예시)

- 대포통장 양도행위 및 통장매매를 위한 광고행위의 처벌근거 신설 추진
-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 도입 추진

■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적극 대응

① i)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ii) 불법 사금융, iii) 불법 채권추심, iv) 꺾기, v) 보험사기를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

* (예시)

- 금감원내에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대응 협의체" 운용

②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 (예시)

- 범정부대책기구(불법사금융 척결 T/F 등)에 적극 참여, 필요한 정보 공유

■ 4 금융권에 잠재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영업관행 혁신

① 금융업권별로 잠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건전 영업관행을 혁신

* (예시)

- (공통) 신규계약 상품판매는 쉽게 하면서, 계약해지는 어렵게 하는 금융 거래 관행, 과도한 신용정보 수집·활용 관행,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설명 미흡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부당한 이자 미지급 또는 지연
- (증권) 매수의견 위주의 애널리스트 보고서, 부당한 펀드 펀·출입, 설명 의무 미이행, 짜투리펀드 양산
- (보험) 보험상품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행위,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지연 및 삭감 등
- (신용카드) 일방적 부가서비스 제공 중단, 부당한 휴면카드 재발급

- 금감원에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금융적폐 해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운용

② 금융권 스스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요한 경영가치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

* (예시)

- 금융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인력 배치 및 보강 권고

5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금융권의 행태 쇄신

① 일부 금융권에서 보여지는 학연·지연·누구 사람·어느 출신 등에 따른 정실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중용될 수 있는 인사문화 확산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부터 솔선하여 능력과 평판, 도덕성 등을 우선하는 인사 단행

②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보상체계, 고객재산을 활용한 임직원 특혜부여 관행 등을 개선

* (예시)

- 경영실적과 무관한 과도한 보수지급 관행 개선
- 증권사 자기매매 관련 성과보상체계 개선
- 금융회사에 잔존하는 부당한 임직원 저리대출 관행 등 개선

③ 금융분쟁에 대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제기 관행, 대주주 및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관행 근절

④ 금융업계에 대한 신뢰회복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 전문성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도입 및 정착 지원

* 영국 Chartered Banker Professional Standards Board의 사례 참조

5.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혁신

◆ 금융감독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금융회사로부터 존중 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혁신 노력 강화

1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임무 완수

- ① 어떠한 상황과 여건하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주어진 소임을 완수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 추진

* (예시)

- 금융적폐해소 전담조직 운용, 금융애로 파악·수렴 전담조직 신설, 검사품질관리 및 상시감시감독 기능 강화, 금융상황 신속 대응조직 설치 등

- ② 다만, 금융감독원의 임무를 벗어나는 과도한 개입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인내하고 개입의 어려움을 설득

2 능력 본위의 인사원칙 솔선수범

- ① 출신, 학연, 지연 등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업무능력, 평판,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누구라도 중용
-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실 인사를 타파하는 선도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매진
- ② 동시에 능력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3 청렴하고 강직한 금융감독원像 정립

- ① 부당한 청탁 배격, 지위·권한의 남용 및 부당한 이권개입·알선·청탁 방지 등 직업 윤리의식을 재차 확립

* (예시)

- 청렴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직원들의 윤리인식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
- 임직원에게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
- 청렴·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확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

- ②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조직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 (예시)

- 금융회사에 대한 존중감과 도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원 복무규범'과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

4 국민 및 금융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

- ① 가급적 월 1회 원장(또는 부원장)이 언론과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場 마련*

* 기자간담회 또는 티타임(tea time)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

- ② 금융회사 경영진, 금융소비자, 금융전문가 등과 금융현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토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금융감독방향에 대한 평가와 입장 청취

- 대언론 홍보용 행사 등 형식적인 모임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업무 관련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예시)

-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소그룹 단위 비공개 간담회 수시 개최
- 금융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금융업권별 간담회 및 경영진 면담 정례화
- 학계, 언론, 금융업권,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5 금융감독의 전문성 제고 및 금융소외계층 등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①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경주

* (예시)

- 기 운영중인 검사아카데미 이외에도 각 전문분야(소비자보호, 법무, 회계)별 아카데미 과정을 다양하게 실시
- 변호사, 박사 등 우수인력 지속 확충 및 체계적인 교육·연수 실시

② 격·오지 주민과 같이 금융교육·상담 기회가 제한된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 (예시)

- 금융사랑방버스의 격오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 금융교육 기회가 제한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
-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해 전화, 대면 등 개별 접촉방식으로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 실시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금감원 콜센터 1332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 (예시)

- 민원업무 프로세스 관련 해외사례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민원업무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도모

④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금융상품 선택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제공 확대

* (예시)

- 질 높고, 풍부한 금융통계정보를 발굴·공개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 판매량이 많은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별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⑤ 쪽방촌, 급식소 등 수년간 이어온 봉사와 나눔활동*을 진정성있게 지속

* (예시)

- 1사1촌(10년째), 연탄나눔(9년째), IT나눔·해외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연말 아름다운 나눔(이하 5년째)

추진계획

◇ 「금융감독 채신 및 운영 방향」을 금융감독원장 임기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 청사진”으로 삼고

-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매년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함은 물론
- 과제별로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금융감독원장이 매분기별로 점검할 계획

*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 실천과제

◇ 아울러, 금융시장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천할 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

◇ 이러한 과제의 실천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의 바탕 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를 기대

관리코드		세부 실천과제
1		금융감독의 혁신 및 역량 강화
	1-①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 존중
	1-①-①	금융회사의 경영 간여를 최소화하는 감독 추진
	1-①-②	금융회사가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
	1-②	차별적 감독 강화
	1-②-①	금융업권별·금융회사별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 강화
	1-②-②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회사에 대한 감독기준의 합리적 완화
	1-③	건전성 유지·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감독
	1-③-①	건전성 감독기준의 합리적 개선
	1-③-②	국제적 도입기준의 연착륙 방안 마련
	1-③-③	금융업의 신뢰저하를 초래하는 감독방식 개선
	1-④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지원
	1-④-①	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추진
	1-④-②	핀테크 지원 강화
	1-④-③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1-④-④	금융회사의 해외 新시장 개척 적극 지원
	1-⑤	금융 감독업무 역량 강화
	1-⑤-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1-⑤-②	금융감독 우수인력 양성 및 활용
2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의 쇄신
	2-①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및 현장검사의 축소
	2-①-①	관행적 종합검사의 점진적 축소·폐지
	2-①-②	현장검사 최소화
	2-①-③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 및 상시감시 기능 강화
	2-②	문제소지 부문 중심의 선별적 검사 강화 및 엄중 제재
	2-②-①	문제소지 부문 및 회사 중심의 선별검사 강화
	2-②-②	중대한 위규사항 발견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제재
	2-③	검사·제재 시스템의 개선
	2-③-①	검사매뉴얼 및 검사프로세스 전면 개선
	2-③-②	제재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 제고

관리코드		세부 실천과제
2-4	검사제재 방식의 전환	
	2-4-①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 전환
	2-4-②	경미한 위반사항은 금융회사에 조치의뢰
	2-4-③	금전적·기관 중심의 제재 확대
	2-5 자율에 상응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2-5-①	금융회사 자체 감사 및 금융감독원의 점검 강화
3	2-5-②	내부통제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3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3-1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기능 강화	
	3-1-①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보기능 강화
	3-1-②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에 대비 및 관계기관 공조 강화
	3-2 효율적 구조개혁 추진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적극 해소	
	3-2-①	상시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3-2-②	부실기업 발생시 즉각 대응 및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
	3-3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3-3-①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기반 확충
	3-3-②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조화 및 유효성 제고
	3-4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3-4-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제재 부과
	3-4-②	금융사고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발생시 신속대응체계 확립
	3-5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	
	3-5-①	자본시장의 질서문란 행위에 엄정 대응
	3-5-②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 구축
	4 금융적폐의 청산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및 금융중개 기능 활성화	
	4-1 보신적 대출관행의 쇄신	
	4-1-①	보신적 대출행태의 합리적 개선 유도
	4-1-②	기술금융 및 관계형금융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4-2 대포통장 발급 근절	
	4-2-①	예금통장 발급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4-2-②	대포통장의 공급·이용행위 차단방안 추진

관리코드		세부 실천과제
4	4-③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에 적극 대응
	4-③-①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에 총력 대응
	4-③-②	대포통장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체제 강화
	4-④	금융권에 잠재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영업관행 혁신
	4-④-①	금융업권별 잠재되어 있는 불건전 영업관행 혁신
	4-④-②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요한 경영가치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
	4-⑤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금융권의 행태 쇄신
	4-⑤-①	금융권의 정실 인사관행 타파
	4-⑤-②	성과 미연동 보상체계, 임직원 특혜부여 관행 등 개선
	4-⑤-③	과도한 소송제기 관행 및 부당 내부거래관행 근절
	4-⑤-④	윤리 전문성 기준 도입 및 정착 지원
5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혁신
	5-①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임무 완수
	5-①-①	금융감독원에 주어진 소임 완수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5-①-②	금융감독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
	5-②	능력 본위의 인사원칙 솔선수범
	5-②-①	능력위주의 인사원칙 확립
	5-②-②	인사·보상체계의 합리적 개선
	5-③	청렴하고 강직한 금융감독원像 정립
	5-③-①	청렴하고 강직한 직업윤리의식 재확립
	5-③-②	공정·투명한 업무처리 관행 정착
	5-④	국민 및 금융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
	5-④-①	원장이 언론과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 마련
	5-④-②	금융회사 경영진 등과 금융현안 토의 문화 구축
	5-⑤	금융감독의 전문성 제고 및 금융소외계층 등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5-⑤-①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전문성 제고 노력 지속
	5-⑤-②	금융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5-⑤-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금감원콜센터 1332 개선
	5-⑤-④	금융정보 제공 확대
	5-⑤-⑤	봉사 및 나눔활동을 진정성 있게 지속